

국가회계 재지토계

ISSN 2635-7119

2023년 봄호
Vol. 34



국가회계 동향

2022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재정통계 동향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오피니언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CONTENTS

2023년 봄호

Vol. 34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국가회계 재정통계

VOL. 34

계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3년 봄호

발행인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편집 박성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문창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장(국가회계 총괄)
 윤성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결산교육팀장(결산교육 총괄)
 박윤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재정통계팀장(재정통계 총괄)
 윤영훈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연구TF팀장(회계연구 총괄)

전화 044-414-2265(센터)
홈페이지 <http://gafsc.kipf.re.kr>
발행일 2023년 3월 30일
제작처 경성문화사

국가회계 동향

- 04 2022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15 2023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 23 IPSAS ED 83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의견 제출
- 28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 32 해외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38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41 2023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재정통계 동향

- 48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 56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 및 결산 일정



공익법인회계 동향

- 62 2022년 세제개편 후속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세미나

- 82 제1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

센터 동향

- 68 센터 연구 진행 동향
- 72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 75 일본 정부회계학회 주최 정부회계
비교연구 심포지엄 발표
- 77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CCA) 온라인회의 참석
- 79 2023년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오피니언

- 94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유승원 교수(고려대학교, 한국회계학회 회장)



공지사항

- 99 구독 안내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회계 동향



- 2022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 2023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 IPSAS ED 83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의견 제출
-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 해외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

01 2022년 4분기 IPSASB 정례회의 참석 결과



2022년 IPSASB 정례회의(2022.12. 6., 캐나다 토론토)

가. 출장 개요

- 목 적: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 정례회의 참석
- 출장기간: 2022. 12. 5.(월)~2022. 12. 11.(일)
- 출 장 지: 캐나다 토론토

나. 주요 내용

2022년 4분기 IPSASB¹⁾ 정례회의가 12월 초 5일간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되었다. IPSASB는 12월 회의에서 개념체계 개정안과 IPSAS 기준서의 제·개정안인 ED

1) IPSASB: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76~78에 대한 최종 문구 검토 및 제·개정 절차 준수 여부를 논의하였다. 또한 의결 사항으로는 측정 관련 개념체계 개정안과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안의 최종 승인이 있었다. 다만, 측정 기준서 제정안의 경우 2023년 3월로 미루어 승인하도록 하였다.

다. 세부 내용

1) 측정(Measurement)

‘측정(Measurement)’ 프로젝트의 개요는 국제공공부문의 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Board, 이하 ‘IPSASB’)에서 2017년 3월에 승인되었으며, 측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수정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관련 비용의 회계처리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9년 4월 IPSASB는 CP(자문보고서)²⁾를 통해 공공부문 특화 현행가치 측정 기준으로서 ‘현행운영가치(Current Operational Value, 이하 ‘COV’)'의 개발 및 사용을 제안하였으며, 이해관계자의 강한 지지를 얻었다. COV는 ‘측정일 현재 실체의 서비스 전달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의 가치’를 의미하며, IPSASB는 2022년 9월 회의에서 공정가치와의 차이점에 기반한 COV의 개념적 원칙(Principles)과 적용원칙(Application of Principles)을 도출하였다.

또한, IPSASB는 측정 관련 3종의 공개초안(ED 76, ED 77, ED 78)이 내용상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일을 일치시킬 수 있도록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를 조절하여 왔다. 이와 관련해 2022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는 IPSASB가 12월 회의에서 논의했던 개념체계 개정안과 IPSAS 기준서의 제·개정안에 대한 최종 문구 검토 및 제·개정 절차 준수 여부를 평가하였다. 각 공개초안에 대한 논의사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2) IPSASB, “Measurement,” Consultation Paper, 2019. 4.

표 1 IPSASB 측정 관련 공개초안 논의사항

공개초안	논의사항
ED 76	2022년 10월 체크인 회의 결과로 반영된 개념체계 제7장의 문단(Core-Text) 및 결론도출근거의 개정 문구에 원칙적 결함이 있는지 검토
ED 77	2022년 9월 정례회의에서 합의된 COV의 개념적 원칙 및 적용원칙들이 기준서(안)의 관련 문단에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검토
ED 78	비교환거래로 취득한 유형자산의 최초 측정기준을 기존의 간주원가(Deemed Cost) 대신 공정가치로 명시한 기준서(안)의 적정성에 대해 논의

2022년 4분기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측정 관련 개념체계 개정안과 유형자산 기준서 개정안을 최종 승인하였으나, 측정 기준서 제정안의 경우 간주원가의 개념 및 적용 대상과 관련해 12월 회의 논의 결과에 대한 반영이 필요함에 따라 2023년 3월로 미루어 승인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IPSASB는 측정 기준서 제정안을 2023년 3월 승인한 이후부터 타 IPSAS에 대한 COV의 적용 가능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측정 프로젝트의 두 번째 단계를 개시할 계획이다.

● 시사점

IPSASB는 공공부문의 특성에 부합하는 측정기준을 정의하고 다듬기 위해 5년이 넘는 오랜 기간에 걸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23년에는 그 결과로 개념체계의 부분 개정안과 새로운 IPSAS 기준서인 ‘측정’을 최종 공표할 예정이다.

개념체계의 부분 개정안과 측정 관련 IPSAS 기준서는 개별 IPSAS 기준서에서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왔던 자산 및 부채의 측정 관련 용어와 개념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부문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측정기준이 무엇인지 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기존 총 10개(자산 5개, 부채 5개)에 달하던 측정기준을 총 6개(자산 3개, 부채 3개)로 간소화시켰으며, 측정의 서열체계를 만들어 이들의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표 2 IPSAS 측정기준: 개정 전·후 비교

개정 전		개정 후	
자산	부채	자산	부채
① 역사적 원가	① 역사적 원가	① 역사적 원가	① 역사적 원가
② 시장가치	② 시장가치	② 현행운영가치	② 공정가치
③ 대체원가	③ 인수가격	③ 공정가치	③ 이행원가
④ 순판매가격	④ 해제원가		
⑤ 사용가치	⑤ 이행원가		

이 과정에서 IPSASB는 실체가 자산·부채를 소유·부담하는 목적과 이들 항목의 측정모형과 기준, 기법을 개념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자산 및 부채 관련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공공부문 실체가 재무역량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금융자산을 취득하였다면 당해 자산은 향후 매각 등을 통해 얻을 가치로 측정될 때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므로 현행 가치 모형 중에서 공정가치 측정기준으로 측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때 당해 금융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는 금융자산의 최초 측정치에 포함되지 않는데, 이는 공정가치가 개념적으로 자산을 매도하여 얻을 가치(유출가치)를 표방하므로 취득 시점에 발생한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개념적으로 일관성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도 시점에 발생할 거래원가는 공정가치 측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

또한 IPSASB의 측정 관련 기준의 내용과 체계를 살펴볼 때, 국가회계기준과 국가회계예규들은 자산 및 부채의 유형(성질)별로 적용할 측정 방법을 단순히 지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초 측정 시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취득원가로, 금융자산 중 파생상품자산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자산 및 부채의 보유 혹은 부담 목적을 고려하지 않는 이와 같은 규정 중심의 측정 회계처리 방식은 특히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측정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9는 원칙적으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그 취득원가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문단 47은 후속적으로 재평가 사유를 충족하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해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도록 요구한다. 또한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52는 재평가 대상 일반유형자산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공정가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는 경우 대체적 측정기준으로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등을 공정가액으로 갈음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표 3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9, 47, 52

-
9. **(취득원가의 측정)**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과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취득한 자산의 공정가액 및 취득부대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 자산의 제작, 매입, 건설을 위하여 사용된 자금을 차입금으로 총당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 등은 원가에 산입하지 않고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
-
47. **(재평가 사유)** (1)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다음 중 하나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재평가한다.
 (가) 취득 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자산
 (나)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 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
-
52. **(재평가금액의 측정)** 최초 인식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금액은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재평가 기준일 전후 1년 이내를 평가시점으로 하는 공정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재평가 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대체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측정할 수 있다.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은 문맥상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을 원칙적으로 취득원가로 측정하는 취지를 갖고 있다고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들에 대한 재평가 과정이 제약 없이 거의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없어 대부분의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이 공정가액의 대용치로 측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은 그 정의상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득·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므로 정보이용자 입장에서는 당해 자산의 서비스 원가를 파악할 수 있는 역사적 원가 정보나 당해 자산의 관리상태 변화에 따른 운영역량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현행운영가치 정보가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재정상태표는 이들의 재무역량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공정가액으로 표시하거나 세무신고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일반 국민은 물론, 당해 자산의 관리 책임이 있는 정부 당국에게도 유용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IPSASB의 측정 프로젝트 추진 결과들은 공공부문에 적합한 측정 규정을 도입하는 데 필요한 개념적 토대가 될 수 있으므로, 향후 당해 측정 기준서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고려하여 국가회계기준 및 국가회계예규 측정 규정의 개선 과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2) 수익 및 이전비용(Revenue and Transfer Expenses)

IPSASB는 IFRS 15의 수행의무 개념을 이용하여 공공부문의 수익 거래와 비용 거래의 인식 원칙을 개편하기 위한 ‘수익(Revenue)’ 프로젝트와 ‘비교환비용(Non-exchange Expenses)’ 프로젝트를 2015년 3월부터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공개초안(ED)에 대한 답변 검토를 시작하였다.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수행의무 개념을 차용할 경우 수익 IPSAS 기준서와 IFRS 15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교환거래와 비교환거래를 구분(동등한 가치를 교환하는지 여부 판단)하기 어렵고, 비교환비용에 대한 기준서 미비로 적용할 회계기준이 불확실하는 등 현행 수익 및 비용 IPSAS 기준서의 실무 적용상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2022년 3분기 회의 이후 IPSASB는 UN과의 협업을 통해 수익 및 이전비용 기준서(안)의 회계처리 원칙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조사한 바 있으며, 2022년 4분기 정례 회의에서는 수익 및 이전비용 기준서(안)의 적용사례 및 결론도출근거에 대한 최종 문구를 검토하였다. 3종의 공개초안에 수록된 적용사례가 수익 및 이전비용의 회계처리 원칙을 설명하기에 더 이상 적절하지 않거나 중복 또는 반복되는 사례가 있어 총 137개였던 수익 및 비용 기준서(안)의 적용사례를 74개로 정리하였다.

● 시사점

IPSASB는 현재 수익 거래의 유형별로 적용 대상 기준서를 나누는 방식을 폐지하고 하나로 통합된 수익 기준서를 개발하는 ‘수익’ 프로젝트와 대가 없이 자원을 이전하여 발생하는 이전비용에 관한 기준서를 개발하는 ‘이전비용’ 프로젝트의 막바지 단계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특성을 고려할 때 수익 및 비용의 인식 시점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무엇인지와 수익거래와 비용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인식기준과 측정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내년 중에 IPSASB가 해당 프로젝트를 완료하게 되면 수익 또는 비용 거래를 교환거래/비교환거래로 구분하던 틀에서 벗어나 구속력 있는 합의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 혹은 비용인지를 중심으로 그 인식 및 측정 방법을 달리하게 될 것이다.

한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2021년부터 정보이용자가 국가결산서를 더욱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결산보고서를 보다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센터는 재정운영표의 형식을 성질별 양식으로 개편하면서 IPSASB의 수익 및 이전비용 프로젝트의 추진 동향을 적극 참고하여 교환수익과 비교환수익을 나눈 뒤 비교환수익만을 별도로 표시하던 방법을 폐기하고, 자원을 대가 없이 이전(수취)하거나 발생한 비용(수익)인지를 중심으로 정보를 대칭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예를 들어, 수익은 크게 국제수익과 이전수익, 국가운영수익으로 분류하며, 비용은 이전비용과 국가운영비용으로 분류함으로써 이전거래를 통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의 규모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단계에서는 재정운영표에 표시되는 계정과목을 재분류하고 그 명칭을 수정한 것일 뿐 IPSASB의 것과 같이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수익과 비용의 인식·측정기준을 개발하여 적용한 것은 아니므로 IPSASB의 수익 및 이전비용 기준서 개발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참고로 삼을 필요가 있다.



3)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IPSASB는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을 위한 논의를 개시하였다. 2022년 5월에 자문보고서(CP)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을 발간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하였으며, 2022년 7월과 8월에는 자문의견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5개 지역(유럽, 남미, 아프리카, 프랑스어권(Francophone)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총 127개국에서 참석자 492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서면 의견서의 경우 총 70개의 의견서가 제출되었다. 아프리카 및 중동(27%)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유럽(23%), 북미(19%), 오세아니아(10%), 아시아(8%), 남미(6%) 순으로 의견서의 비중이 높았다.

그림 1 IPSASB Agenda Item 7.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표지 및 의견 수렴 결과



또한 2022년 9월 공공부문기준제정자포럼에서의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의 당위성 확인 및 IPSASB의 지침 개발 전략 논의에 이어 12월 정례회의에서는 자문보고서(CP)에 대한 피드백을 분석하고 IPSASB 검토를 위한 주요 이슈를 식별하였다.

● 예비 견해 1: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대한 필요가 있는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자문보고서의 첫 번째 항목에서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압도적인 동의 및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전체 응답자 중 약 97%)가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부의 광범위한 영향과 책임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였다. 최종 제출된 70개의 서면 의견서 중 50%정도는 이전에 IPSASB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신규 응답자로,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을 시사한다.

● 예비 견해 2: 경험, 프로세스 및 관계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에 효과적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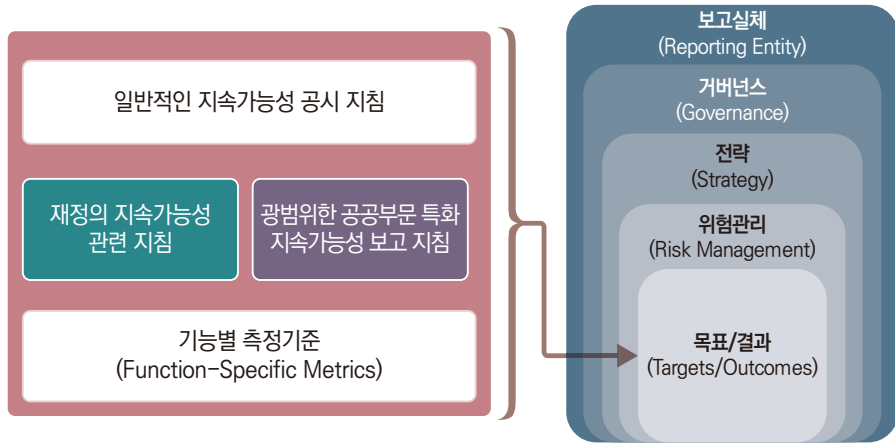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촉진 자문보고서의 두 번째 항목에서는 IPSASB의 경험, 프로세스 및 관계가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에 효과적인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대부분의 동의를 확인하였다. 부분적으로 동의한 응답자는 IPSASB가 개발한 지침의 신뢰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회와 스태프의 전문지식이 전제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으며, 일부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이하 'ISSB')와 같은 별도의 지속가능성 관련 사회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예비 견해 3: 자문보고서(CP)에서 제안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³⁾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리고 기타 국제기관과의 협력에 대해서 동의하는가?

세 번째 항목에선 자문보고서(CP)가 제안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대한 의견 조희 및 기타 국제기관과의 협력에 대한 지지 의사를 확인하였다. 많은 이해관계자가 ISSB 공개초안을 활용할 것을 지지하였으나 공공부문에 민간부문 지침을 적용할 때 신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3) 공공부문에 대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는 ISSB 지속가능성 보고기준 공개초안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일반적인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침, 재정의 지속가능성(Financial Sustainability)에 대한 지침, 광범위한 공공부문 특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기능 및 거버넌스의 특수성을 다루기 위한 공공부문 실체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지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보고 실체가 설정된 목표 및 결과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채택한 거버넌스, 전략 및 위험관리 도구를 이용한다.

그림 2 자문보고서(CP)에서 제안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 **예비 견해 4:** IPSASB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 시,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및 기후 관련 공시를 첫 번째 주제로 다루는 것에 동의하는가?

네 번째 항목에서는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및 기후 관련 공시를 첫 번째 주제로 다루는 것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이슈이며, 일반적인 지속가능성 및 기후 관련 공시 지침은 확장성, 파급효과 및 긴급성 측면에서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일부 응답자는 빈곤, 기아, 건강 및 복지와 같은 주제가 공공부문에 더 시급하다고 제안하였다.

● **예비 견해 5:**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을 위해 주요 지원 요소(Enablers)가 필요한가?

마지막 항목에서는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을 위해 필요한 주요 지원 요소(Enablers)에 대해 동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IPSASB가 자문보고서(CP)를 통해 제안한 5가지의 지원 요소는 1) 적절한 자원 확보, 2) 지속가능성 자문 그룹, 3) 이사진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 4) 타 지속가능성 국제기준기구와의 협력, 5) 국가기준 제정자와의 소통이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자는 해당 지원 요소의 필요성에 동의하였으나, 이외에도 많은 추가 지원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시사점

공공부문의 국제 수준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은 아직 착수 단계에 지나지 않으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높은 관심과 지지에 비추어 볼 때 2023년 이후 본격적으로 지침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IPSASB는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FASAB(Federal Accounting Standards Advisory Board, 연방회계기준자문위원회)의 경우 기후와 관련된 재무적 공시체계 개발을 진행 중이다. 민간부문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특히 GRI⁴⁾, TCFD 및 IFRS S1, S2를 기반으로 개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민간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 진행상황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는 특수한 사항(투자자 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존재, 정책과의 연계 등)이나 공공부문 보고 실체의 종류(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 등)에 따라 민간부문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4)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 기업, 정부 및 기타 조직이 기후변화, 인권 및 부패와 같은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소통하도록 돕는 국제 독립 표준기구로,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속가능성 보고기준을 제공한다.

02 2023년 1분기 IPSASB 정례회의 안건 소개



국제공공부문의회계기준위원회(IPSASB) 2023년 1분기 정례회의가 3월 14일부터 17일
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진행되었다. 아래는 주요 안건의 내용을 요약한 내용이다.

안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ipsasb.org/meetings/ipsasb-meeting-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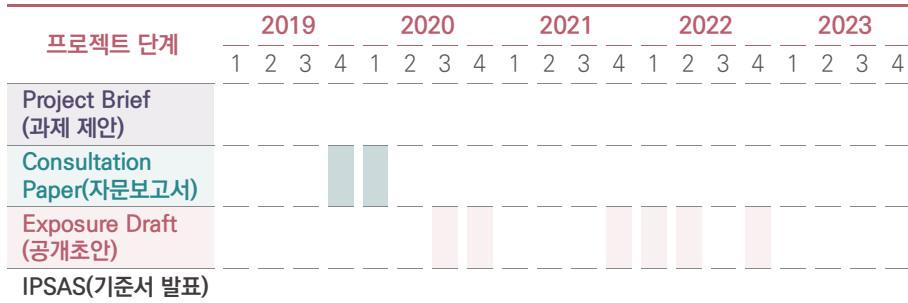
프로젝트	안건
측정	안건 4, 안건 11: 측정(Measurement)
개념체계	안건 5, 안건 7: 개념체계 일부 개정 (Limited Scope Update of Conceptual Framework)
이전비용	안건 6: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
수익	안건 8: 수익(Revenue)
지속가능성 보고	안건 9: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의 보고 (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퇴직연금제도	안건 10: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Benefit Plans)
천연자원	안건 12: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1. 측정(Measurement)

● 목적

측정 프로젝트의 목적은 IPSAS의 측정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측정기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거래원가 및 차입원가의 회계처리 방법 등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사항

- 본 정례회의에서 IPSAS 46, 측정(Measurement)이 적법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검토 및 확인하고 승인을 의결함. 따라서 IPSAS 46의 적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유효할 것임
- IPSAS 46은 공공부문의 통합적 측정 기준을 정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IPSAS 측정 규정과 현 개념체계의 정합성이 개선됨
- IPSASB는 지난 2021년 4월 ED 77, Measurement를 발표하였고 이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분석 및 검토하여 IPSAS 46에 반영하였음
- 지난 2022년 12월, IPSASB는 측정 프로젝트의 Phase II를 통한 현행운영가치(COV)의 IPSAS 기준 적용 가능성을 검토한 바 있으며, 본 정례회의에서 Phase II의 범위가 결정될 것임

Agenda Item 4.2.1

Approval of IPSAS 46, Measurement

IPSASB Due Process

- A Staff present revised content of exposed Standard See Agenda Item 4.3.1
- B Program & Technical Director advises whether Due Process followed effectively PTD assertion
- C IPSASB confirms whether it is satisfied that Due Process has been followed effectively Chair asks for confirmation
- D IPSASB votes on approval of IPSAS 46, Measurement Staff recommend approval
- E IPSASB considers whether vote on re-exposure is necessary No substantial changes
- F IPSASB sets effective date for IPSAS 46 January 1, 2025
- G IPSASB issues Basis for Conclusions See Agenda Item 4.3.1

2. 개념체계 일부 개정(Conceptual Framework-Limited Scope Update)

● 목적

개념체계 개정의 목적은 일부 이슈에 대해 사안의 시급함, 영향력 및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개념체계에 반영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				2021				2022				202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 (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 (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사항

- 본 정례회의에서 Chapter 5, 재무제표의 요소(El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가 적법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검토 및 확인하고 Chapter 5의 승인을 의결함
- 지난 2022년 1월 IPSASB는 ED 81, 개념체계 개정: Chapter 3(질적특성) 및 Chapter 5(재무제표의 요소)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Chapter 5의 승인에 이견 없음
- IPSASB 스태프와 위원회 스폰서의 의견에 따르면 Chapter 5는 승인 시점부터 유효하며, 해당 내용은 2023 IPSASB 핸드북에 수록될 것임

Agenda Item 5.2.1

Approval of Updated Chapter 5, El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IPSASB Due Process

- | | | |
|---|--|-----------------------------|
| A | Staff present revised content of exposed updated Chapter 5 - not a | See Agenda Item 5.3.1 |
| B | Program & Technical Director advises whether Due Process followed effectively | PTD assertion |
| C | IPSASB confirms whether it is satisfied that Due Process has been followed effectively | Chair asks for confirmation |
| D | IPSASB votes on approval of Updated Chapter 5, Elements in Financial Statements | Staff recommend approval |
| E | IPSASB considers whether vote on re-exposure is necessary | No substantial changes |
| F | IPSASB sets effective date | No effective date |
| G | IPSASB issues Basis for Conclusions | See Agenda Item 5.3.1 |

3.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

● 목적

이전비용 프로젝트의 목적은 비교환거래(사회복지 부문은 제외함)를 이행하는 회계 실체가 적용할 수 있는 측정 및 인식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19				2020				2021				2022				202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 (과제 제안)	-----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																			
Exposure Draft (공개초안)	■	■	■	■					■	■	■	■	■	■	■	■	■	■	■	■
IPSAS(기준서 발표)	-----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사항

- 본 정례회의에서 IPSAS 48, 이전비용(Transfer Expenses)에 대해 검토하고 승인을 의결함에 따라 IPSAS 48 기준은 2023년 5월에 출판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유효할 예정임
- 지난 2020년 2월 IPSASB는 ED 72, Transfer Expenses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IPSAS 48 기준 제정에 참고하였음
- ED 72의 일부 내용이 IPSAS 48 기준서에서 개정되었으나, 대부분의 개정이 공개초안 검토 의견을 바탕으로 이루어졌고 기준 재공개(Re-exposure) 시의 실익도 크지 않음으로 판단됨

Agenda Item 6.2.1

Approval of IPSAS 48, Transfer Expenses

IPSASB Due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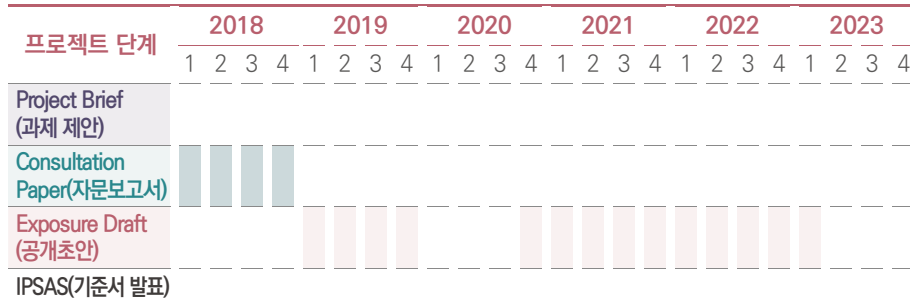
- A Staff present revised content of exposed Standard See Agenda Item 6.3.1
- B Program & Technical Director advises whether Due Process followed effectively PTD assertion
- C IPSASB confirms whether it is satisfied that Due Process has been followed effectively Chair asks for confirmation
- D IPSASB votes on approval of IPSAS 48, Transfer Expenses Staff recommend approval
- E IPSASB considers whether vote on re-exposure is necessary See Agenda Item 6.2.2
- F IPSASB sets effective date for IPSAS 48 January 1, 2026
- G IPSASB issues Basis for Conclusions See Agenda Item 6.3.1

4. 수익(Revenue)

● 목적

수익 프로젝트의 목적은 수익거래의 측정 및 인식 관련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사항

- 본 정례회의에서 IPSAS 47, 수익(Revenue)이 적법절차를 거쳐 작성되었음을 확인하고 승인을 의결함에 따라, IPSAS 47 기준은 2023년 5월에 출판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유효할 예정임
- IPSAS 47은 현행 IPSAS 9(교환거래 수익), IPSAS 11(건설계약) 및 IPSAS 23(비교환거래 수익)을 대체하여 수행의무(Performance Obligation) 중심의 수익 규정을 제시함
- 지난 2020년 2월 IPSASB는 ED 70, Revenue with Performance Obligations 및 ED 71, Revenue without Performance Obligations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대해 수렴한 의견을 IPSAS 47 기준 제정에 참고하였음

Agenda Item 8.2.1

Approval of IPSAS 47, Revenue

IPSASB Due Process

- | | | |
|---|--|-----------------------------|
| A | Staff present revised content of exposed Standard | See Agenda Item 8.3.1 |
| B | Program & Technical Director advises whether Due Process followed effectively | PTD assertion |
| C | IPSASB confirms whether it is satisfied that Due Process has been followed effectively | Chair asks for confirmation |
| D | IPSASB votes on approval of IPSAS 47, Revenue | Staff recommend approval |
| E | IPSASB considers whether vote on re-exposure is necessary | See Agenda Item 8.2.2 |
| F | IPSASB sets effective date for IPSAS 47 | January 1, 2026 |
| G | IPSASB issues Basis for Conclusions | See Agenda Item 8.3.1 |

5. 지속가능성 보고(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 목적

지속가능성 보고 프로젝트의 목적은 IPSASB의 RPG(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s) 1 및 RPG 3에 추가될 비권위적 지침을 제정하여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관련 프로그램(Green Programs)의 결과 보고 시에 이러한 지침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논의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2				2023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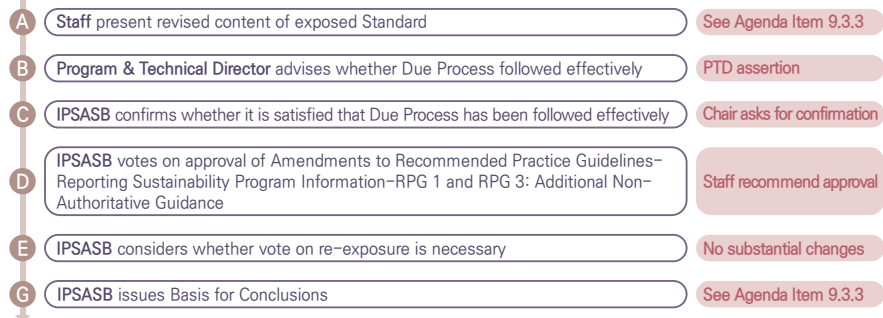
주요 논의사항

- 지난 2022년 11월 IPSASB는 ED 83, 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 RPG 1 and RPG 3: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 ED 83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지속가능성 프로그램 정보 등의 개념에 대한 정의가 분명하지 않음을 지적하는 의견이 제시됨
- 다만 ED 83의 목적은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을 새롭게 제정하는 것이 아닌, 기존 지침의 공공부문 적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으로 스태프는 관련 용어 및 개념을 ED 83에서 정의하지 않는 것을 제안함

Agenda Item 9.2.5

Approval of Amendments to RPGs – 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RPG 1 and RPG 3: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

IPSASB Due Process



6.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Benefit Plans)

● 목적

퇴직연금제도 프로젝트의 목적은 IAS 26, 퇴직연금제도의 회계처리 및 보고 (Accounting and Reporting by Retirement Benefit Plans)를 기반으로 IPSAS 기준을 제정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1				2022				2023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	■					
Exposure Draft(공개초안)			■	■	■	■			■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사항

- 지난 2022년 4월 IPSASB는 ED 82, 퇴직연금제도(Retirement Benefit Plans)를 발표하였으며, 수렴한 의견에 따라 발생한 일부 이슈에 대한 검토를 요함
- 스태프는 ED 82 관련 검토 권한을 DG(Retirement Benefit Plans Drafting Group)에게 위임할 것을 제안함. DG가 참여함에 따라 보다 전문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퇴직연금제도의 통합, IFRS와 IPSAS 기준의 일관성 개선, 공시 사항 추가 등의 이슈가 제시됨



7.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

● 목적

천연자원 프로젝트의 목적은 천연자원의 인식과 측정 관련 이슈를 연구하는 데 있다.

● 진행 경과

프로젝트 단계	2020				2021				2022				2023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Project Brief(과제 제안)																
Consultation Paper(자문보고서)									■	■	■	■				
Exposure Draft(공개초안)																
IPSAS(기준서 발표)																

● 주요 논의사항

주요 논의사항

- 공공부문 천연자원의 인식, 측정, 공시 등에 대한 논의를 목적으로, 지난 2022년 5월 자문보고서(CP) 천연자원(Natural Resources)이 발표되었음
- 해당 자문보고서가 공공부문 천연자원 관련 지침을 제시하기 위한 과정의 첫 단계임에는 응답자 대부분이 동의하였으나, 천연자원의 정의, 인식 및 보고 기준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제시됨
- 자문보고서와 관련하여 제시된 의견에 대해 스태프는 TF협업, IFRS 지침 참고 등을 제안하였으며 2023년 6월에 후속 논의가 있을 예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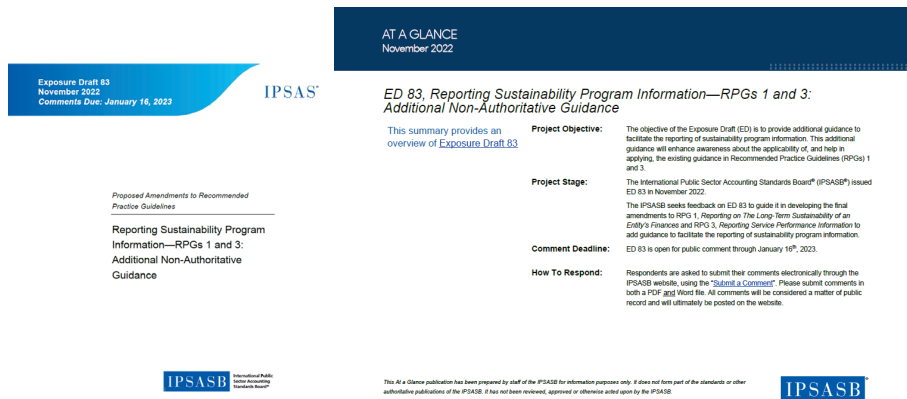


03 IPSAS ED 83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 의견 제출

가. 공개초안 주요 내용

2022년 11월에 IPSASB는 2종의 권장실무지침(Recommended Practice Guidelines, 이하 ‘RPG’)의 개정을 위한 공개초안인 ED 83, ‘지속가능성 정보 보고¹⁾’를 발표하였다. 민간부문에 이어 공공부문에서도 지속가능성 보고체계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지난 12월 정례회의에서 IPSASB는 공공부문에 특화된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다. IPSASB는 이러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 수요에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ED 83을 개발하였으며, ED 83은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사업 정보를 보고할 때 현행 RPG 1, ‘실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와 RPG 3, ‘서비스 성과 정보의 보고’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1 ED 83 표지 및 요약 안내자료



1) ED 83, 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 RPG 1 and 3: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

나. 공개초안 주요 제안사항

1) RPG 1, '실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의 개정

RPG 1, '실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 보고(Reporting on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an Entity's Finances)'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실체 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에 대한 지표를 보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즉, RPG 1은 보고일 현재 시점의 현행 정책 및 의사결정이 미래의 현금 유·출입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는 무엇이고, 이와 관련하여 일반목적 재무제표에 보충되어야 할 정보는 무엇인지 안내하기 위한 지침이다.

ED 83은 RPG 1이 지속가능성 사업 정보 보고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RPG 1의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와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ances)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표 1 주요 제안사항 - RPG 1 개정

구분	주요 내용
① 결론도출근거 (BC37~BC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RPG 1은 지속가능성 관련 거래가 실체 재정의 장기 추정치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공시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함 IPSASB는 지속가능성 사업 정보 보고 시 RPG 1의 원칙 및 지침이 지속가능성 사업의 재무적 영향을 보고하는 데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로 결정함 이를 위해 문단 형식으로 구성된 시행지침(IG) 3개 문단을 RPG 1에 추가할 것을 제안함
② 시행지침 (IG1~IG3)	<p>IG1. RPG 1은 지속가능성 사업 등 실체의 전반적인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보고 과정에 필요한 원칙들을 제공함</p> <p>IG2. 지속가능성 사업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서비스, 수익, 채무)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영향은 현재 정책 등에 대한 가정을 기반으로 모형화되어 전반적인 추정치에 반영되어야 함</p> <p>IG3. 지속가능성 사업과 관련된 추정 미래 현금흐름을 보고할 때에는 RPG 1에 따른 정책·인구·경제에 관한 가정 등 관련 원칙이나 방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용자들이 가정의 중대한 변화로 인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민감도 분석이 사용되어야 함</p>

2) RPG 3, '서비스 성과 정보의 보고'의 개정

RPG 3, '서비스 성과 정보의 보고(Reporting Service Performance Information)'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서비스 성과 정보²⁾를 보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서 이러한 정보의 표시와 선택, 배치, 조직에 관한 원칙 및 방법론을 제공한다.

ED 83은 공공부문실체가 지속가능성 관련 개별 혹은 전체 사업의 성과 정보를 보고하고자 할 때 RPG 3의 가이드라인이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RPG 3의 결론도출근거(Basis for Conclusions)와 시행지침(Implementation Guidances), 적용사례(Illustrative Examples)에 추가할 것을 제안한다.

표 2 주요 제안사항 - RPG 3 개정

구분	주요 내용
① 결론도출근거 (BC 44~BC 49)	<ul style="list-style-type: none"> IPSASB는 일반목적 재무보고서에 지속가능성 사업의 정보를 보고할 때 RPG 3의 원칙과 지침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하고자 RPG 3을 일부 개정하였음 이를 위해 문답 형식으로 구성된 시행지침(IG) 2개와 지속가능성 관련 사업 정보의 보고와 관련된 4가지의 사례 개발을 제안함
② 시행지침 (IG1~IG2)	<p>IG1. RPG 3은 실체가 서비스 성과를 보고하고, 지표(투입, 산출, 결과, 효율성, 효과성) 대비 성과를 측정하는 데 적용 가능한 원칙을 제공하며, 이러한 원칙은 지속가능성 사업과 관련된 서비스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함</p> <p>IG2. RPG 3은 지속가능성 사업의 유형별로 RPG 3의 원칙 적용 방법을 안내하는 사례(IE4~IE8)를 제공함. 사례들은 4가지 유형의 지속가능성 사업 각각에 대해 서비스 성과 목표를 식별하고 투입, 산출, 결과, 효율성, 효과성 지표 관점에서 성과 목표를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함</p>
③ 적용사례 (IE4~IE8)	<p>(사례 1) 녹색채권을 재원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사업</p> <p>(사례 2) 탄소세를 재원으로 하는 지속가능성 사업</p> <p>(사례 3) 기후변화 영향 완화 목적의 사회기반시설 투자</p> <p>(사례 4) 지속가능성 투자에 제공하는 조세지출</p>

2) 여기서 서비스 성과 정보는 실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로, 실체가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그 서비스의 성과 목표 및 달성 정도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다. 공개초안에 대한 센터 의견

IPSASB는 ED 83의 의견요청사항(Specific Matters for Comment)³⁾에서 RPG 1과 RPG 3의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 여부를 묻고 있는데, 센터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IPSASB 측에 회신하였다.

표 3 ED 83의 의견요청사항에 대한 센터 의견서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16 January 2023

Dear Members of the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 Board,

The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GAFSC) at th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KIPF) appreciates the opportunity to comment on IPSASB's Exposure Draft 83 "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 RPGs1 and 3: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

GAFSC agrees that it would be beneficial to provide additional guidance for RPGs 1 and 3 to facilitate more consistent and comparable reporting of the impact of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on an entity's long-term fiscal sustainability and service performance. Given the increasing demand for fiscal intervention promoting climate mitigation and adaptation, it is imperative to properly manag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grams and report their impact on government finance. GAFSC believes that the proposed additional guidance for RPGs 1 and 3 is the meaningful initial step toward a comprehensive sustainability reporting framework for public sector entities.

Notably, the proposed additional non-authoritative guidance does not directly amend RPGs 1 and 3 but complements them by providing clarification on their applicability to "reporting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On page 5, it is stated that "this additional guidance will enhance awareness about the applicability of, and help in applying the existing guidance in RPG 1 and RPG 3" (emphasis added). That is, this ED 83 is intended to apply existing guidance in RPGs 1 and 3 to the emerging issue of "sustainability programs".

3) [SMC 1] RPG 1에서 제안한 시행지침에 동의하는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기술하십시오.

[SMC 2] RPG 3에서 제안한 시행지침과 적용사례에 동의하는지? 만일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기술하십시오.

Nevertheless, the term "sustainability program"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ED 83, although several exemplary sustainability programs are listed in BC 47 including a green bond, a carbon tax, and a tax expenditure for sustainable investment. GASFC is carefully considering whether this lack of clear definition may cause some confusion to preparers and users regarding the notion of fiscal sustainability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While the term "sustainability reporting" is commonly used by private sector standard setters such as IFRS Foundation and EFRAG Sustainability Reporting Board, it should be pointed out that those standards are equipped with a sustainability disclosure taxonomy providing definitions and classifications of various environmentally sustainable activities. Because there is no sustainability disclosure taxonomy for public sector entities equivalent to the IFRS Sustainability Disclosure Taxonomy or EU taxonomy for sustainable activities, a clearer conceptualization or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program information" would be necessary to prevent misunderstanding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programs as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public finance itself. Alternatively, IPSASB may consider the adoption of an existing sustainability taxonomy or the creation of a new public sector-specific sustainability taxonomy.

In addition to this comment on the definition of "sustainability program", GAFSC would like to ask whether it is necessary to use both pound and metric systems to describe the Green Bond program in IE 5 on page 10. To provide a simpler scenario about a sustainability program financed by a Green Bond, GAFSC recommends using a metric system (e.g., 9.98 kilograms instead of 22 pounds) to alleviate the additional cognitive burden of converting the pound system into a metric system. Given that most countries have adopted the metric system, an illustrative example based on the metric system only may seem more relevant to a country that adopted the metric system.

Finally, members of GAFSC would be pleased to discuss further any of these comments at your convenience.

Sincerely,

Sung-Jin Park
Executive Director
Government Accounting and Finance Statistics Center

04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결과



2023년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2023. 3. 9., 프랑스 파리)

가. 출장 개요

- 목 적: 제23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 참석
- 출장기간: 2023. 3. 8.(수)~2023. 3. 12.(일)
- 출 장 지: 프랑스 파리

나. 주요 내용

제23차 OECD 재정관리 및 재무보고 연례회의가 2023년 3월 9일과 10일 양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38개 OECD 회원국과 크로아티아, 대만 등 초청국까지 40개국이 본 회의에 참석하여 재정관리와 재무보고 관련 쟁점 사항을 공유하고 논의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회 보고를 위한 재무정보의 개선 방안,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우발부채, 특히 보증과 관련된 보고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OECD의 국가별 설문조사에 기반하여 OECD 회원국의 재정보고 현황, 특히 FMIS(재정관리정보시스템)의 기능, 개발 현황, 구현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

다. 세부 내용

1일 차, 세션 1 국회와 재무제표 보고(Financial statements and Parliaments)

- 국가재무제표의 주요 목적은 공적 자금 사용에 대한 책임을 의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국가에서 이와 관련한 보다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정보에 대한 요구가 있었음
- 정부 재무제표의 공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발표 및 토론 수행

- (발표 1) 네덜란드 의회의 회계정보 개선 노력(Joost Sneller, 네덜란드 의회 정부지출위원회 의장)
- (발표 2) 의회의 재무제표 검토: 포르투갈의 사례(Paulo Trigo Pereira, 리스본대학교 교수, 공공정책 연구원 원장)
- (발표 3) 민주주의를 위한 회계제도(Henri Midgley, 전 영국회계감사원 감사총괄, 현 더럼대학교 회계학 조교수)
- (발표 4) 국회와 재무제표 보고(Peter Welch, OECD Senior Advisor)

1일 차, 세션 2 우발부채 보고의 개선방안(Improving reporting on contingent liabilities)

- 공공재정건전성이 압박을 받고 있고, 보증의 사용이 정책도구로 매력적일 수 있는 환경에서 보증에 대한 충분한 보고는 특히 중요함
- 보증은 관리가 필요한 우발부채 및 재정적 위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므로 보증에 대한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부의 진정한 재무상태가 잘못 전달될 위험이 있음

- (발표 1) 정부우발부채 점검과 보고의 필요성(David Heald, 글래스고대학교 경영대학 명예교수)
- (발표 2) 호주 정부의 우발채무 보고(Tracey Carroll, 호주 재무부 제1차관보)
- (발표 3) 스위스의 우발채무 보고(Manuela Walker, Danielle Matter, 스위스 연방재정부 회계담당관)

1일 차, 세션 3 회계기준 제정 현황 보고(Report on Standard Setting Activities)

- IPSASB(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 CAG(Consultative Advisory Group), PIC(IPSASB 공익위원회),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 및 EUROSTAT(유럽 공공부문화계기준) 등의 기준 제정 현황

- (발표 1) Ian Carruthers(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위원회 의장)
- (발표 2) Thomas Müller-Marqués Berger(국제공공부문화계기준 자문위원회 의장)
- (발표 3) Jón Ragnar Blöndal(OECD 예산공공지출국장, 국제공공부문화계 공익위원회 공동의장)
- (발표 4) Peeter Leetmaa(EUROSTAT 통계담당관 - 유럽회계기준 팀장)
- (발표 5) Bertrand Perrin(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IFRS 재단)
- (발표 6) Bertrand Perrin(국제회계기준위원회 위원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대리참석)

1일 차, 세션 4 OECD 회원국의 재정관리와 보고 I(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in OECD countries - Part I)

- 재정관리 및 보고 관련 포괄적인 OECD 조사 결과 공유
- 디지털보고를 포함한 보고 현황 공유 및 토론

- (발표 1) 2022 OECD 재정관리와 보고 설문조사 결과(Delphine Moretti, OECD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오스트리아의 예산정보 시각화(Sebastian Heinrich, 오스트리아 연방재정부 차장)
- (발표 3) GC InfoBase 디지털 재무보고(Monia Lahaie, 캐나다 재정위원회 부감사관)
- (발표 4) Rijksfinancien.nl(정부재정공개 웹사이트)(Anna Alberts, 네덜란드 재무부 선임정책관)

2일 차, 세션 5 OECD 회원국의 재정관리와 보고 II(Financial management and reporting in OECD countries - Part II)

- 재정관리 및 보고에 관한 OECD 설문조사 결과 공유 및 OECD 국가의 재정관리 정보시스템(FMIS) 현황 공유
- 다양한 시스템 개발 현황 및 기능, 구현과제 및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 등 논의

- (발표 1) 2022 OECD 재정정보시스템 설문조사 결과(Ivor Beazley, OECD 선임연구위원)
- (발표 2) 에스토니아의 재정정보시스템(Eneken Lipp, 에스토니아 재무부 예산개발과장)
- (발표 3) 영국 정부 업데이트: 위임된 정보시스템 (Andrew Cartner, 영국 재무부 재정지출담당관)
- (발표 4) 정부재정의 디지털 전환: 한국형 재정정보시스템 dBrain+(김태규, 한국재정정보원 전문위원)

2일 차, 세션 6 재정관리 역량 강화(Capabilities for financial management)

- 정부의 재정관리 기능은 행정부 등 각 기관 내에서 점점 더 다양하고 정교한 기능을 요구
- 효과적인 재무관리 및 보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재정 직책에 대한 역량, 경력 관리 및 교육, 전문가와의 파트너십 등에 대하여 현황 공유 및 논의

(발표 1) 재정관리에 요구되는 핵심역량(Ivor Beazley, OECD 선임연구위원)

(발표 2) 그리스 회계개혁하에서의 역량 강화 활동(Dimitrios Paliouras, Panagiotis Kanelleas, Christos Dimos, 그리스 재무부)

(발표 3) 캐나다 공공부문 재정관리 분야의 역량 강화(Monia Lahaie, 캐나다 재정위원회 부감사관)

(발표 4) 공공재정관리 전문화를 위한 지침(Alexander Metcalfe, 영국공인회계사회 공공부문 글로벌 부문장)



05 해외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해외 주요 국가의 재무보고서에 대해 발간 현황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주요 국가로는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를 설정하고 있으며, 필요시 일본 등 비영어권 국가의 재무보고서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해외 주요국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발간 현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영국의 경우, 포괄범위가 넓어 2020회계연도 재무보고서를 2022년 6월에 발간한 이후 발간된 바 없어 제외하였다.

구분	발간일	회계기간	원문	링크
미국	2023. 2. 16.	2021. 10. 1. ~ 2022. 9. 30.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2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호주	2022. 12. 9.	2021. 7. 1. ~ 2022. 6. 30.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2	http://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consolidated-financial-statements/
뉴질랜드	2022. 10. 5.	2021. 7. 1. ~ 2022. 6. 30.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2	http://www.treasury.govt.nz/government/financialstatements
캐나다	2022. 10	2021. 4. 1. ~ 2022. 3. 31.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2	https://www.tpsgc-pwgsc.gc.ca/recgen/cpc-pac/index-eng.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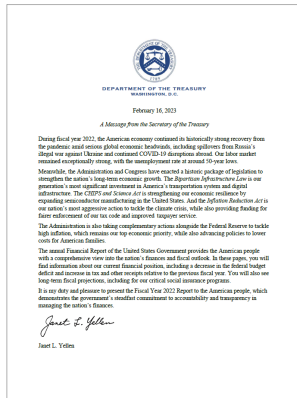
가.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

2022회계연도 「미국 연방정부 재무보고서」가 2023년 2월 16일 발표되었다. 미국의 2022회계연도는 2021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이며, 원문 「FINANCIAL REPORT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FISCAL YEAR 2022」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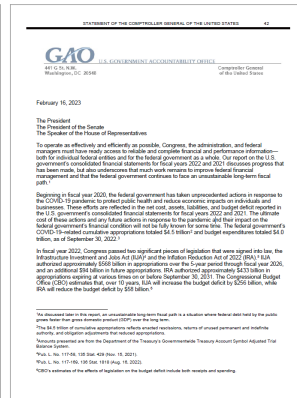
<https://www.fiscal.treasury.gov/reports-statements/financial-report/current-report.html>



연방 결산보고서 표지



장관 메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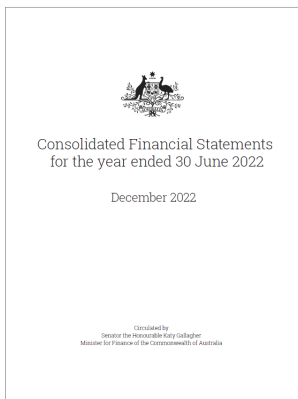


감사원장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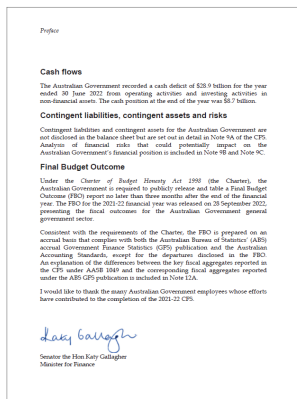
나. 호주 영연방 재무보고서

호주의 2022회계연도 연결재무제표가 2022년 12월 9일 발표되었다. 호주의 2022 회계연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원문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2」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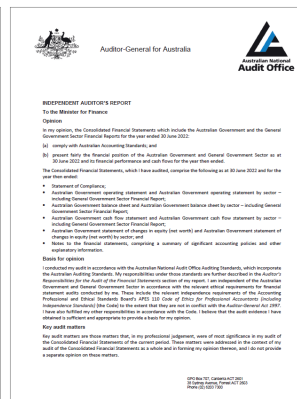
<http://www.finance.gov.au/publications/commonwealth-consolidated-financial-statements/>



결산보고서 표지



재무부 장관 메시지



감사원장 성명서

다. 뉴질랜드 정부 재무보고서

2022회계연도 「뉴질랜드 정부 재무제표」가 2022년 10월 5일 발표되었다. 뉴질랜드의 2022회계연도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이며, 원문 「Financial Statements of the Government of New Zealand for the year ended 30 June 2022」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www.treasury.govt.nz/government/financialstatements>



결산보고서 표지

독립된 감사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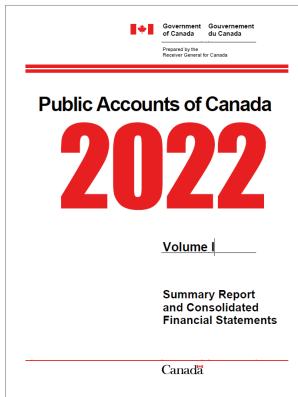
감사원장 성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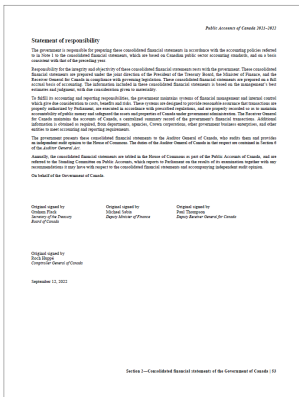
라. 캐나다 정부 재무보고서

캐나다의 2022회계연도 「재무결산서」가 2022년 10월 발표되었다. 캐나다의 2022회계연도는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이며, 원문 「Public Accounts of Canada 2022」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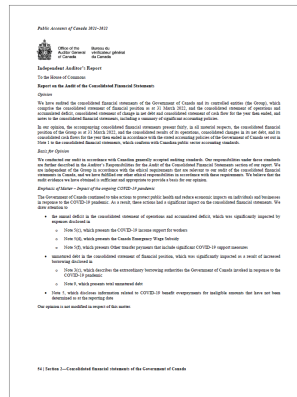
<https://www.tpsgc-pwgsc.gc.ca/recgen/cpc-pac/index-eng.html>



결산보고서 표지



회계책임보고서



독립된 감사보고서



국가회계
재지통계



국가결산 및 교육 동향



-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 2023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01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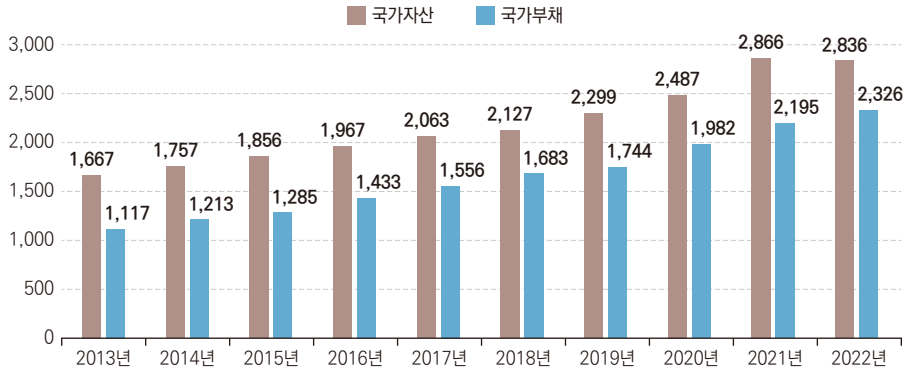


기획재정부가 2023년 4월 4일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를 발표하였다. 국가결산 결과,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모든 회계·기금을 통합한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기금 여유자금 감소 등에 따라 전년 대비 29.8조원 감소한 2,836.3조원, 부채는 국채 발행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30.9조원 증가한 2,326.2조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510.0조원이다.

2022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자산은 전년 대비 29.8조원 감소한 2,836.3조원이다. 이는 기타비유동자산 19.2조원, 사회기반시설 11.9조원이 증가하였지만 유동자산 51.7조원, 투자자산 19.1조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말 현재 자산 항목 중 투자자산과 일반유형자산이 각각 전체 자산의 40.5%와 25.2%를 차지하고, 유동자산이 18.1%로 뒤를 이었다.

그림 1 연도별 국가자산과 국가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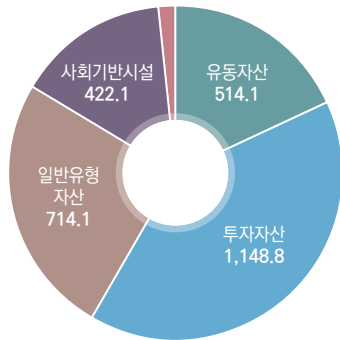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2013~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림 2 국가자산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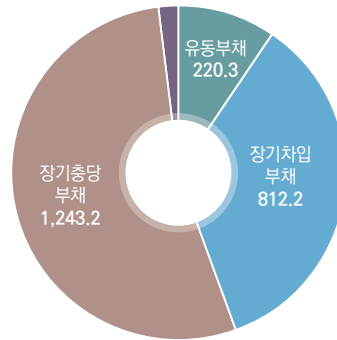
(단위: 조원)



출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그림 3 국가부채의 구성

(단위: 조원)



출처: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022년 말 현재 자산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자산은 단기투자증권 323.4조원, 단기금융상품 41.8조원, 현금및현금성자산 41.3조원 등 총 514.1조원이며, 투자자산은 장기투자증권 794.4조원, 장기대여금 193.1조원 등 총 1,148.8조원이다. 일반유형자산은 토지 465.6조원, 건물 68.2조원 등 총 714.1조원이다.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257.9조원, 철도 43.7조원 등 총 422.1조원이다. 무형자산은 소프트웨어 2.3조원 등 총 2.5조원이다. 기타비유동자산은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19.5조원, 장기미수채권 15.2조원 등 총 34.7조원이다.

2022년 말 현재 재정상태표상 부채는 총 2,326.2조원으로 전년 대비 130.9조원 증가하였다. 주요 요인은 장기차입부채 56.2조원, 장기충당부채 43.8조원, 유동부채 32.9조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2년 말 현재 부채항목 중 장기충당부채가 전체 부채의 53.4%, 장기차입부채가 34.9%, 유동부채가 9.5%를 차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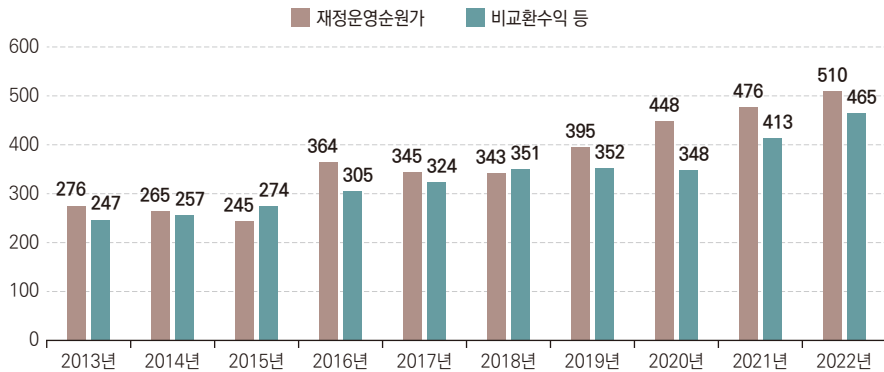
2022년 말 현재 부채의 세부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유동부채는 단기차입금 95.5조원, 유동성장기차입부채 96.4조원 등 총 220.3조원이고, 장기차입부채는 국채(자기국채 차감) 792.1조원, 공채(자기공채 차감) 17.2조원 등 총 812.2조원이다. 장기충당부채 1,243.2조원은 연금충당부채 1,181.3조원, 퇴직수당충당부채 52.8조원, 기타 9.1조원(보충충당부채 5.6조원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비유동부채 50.4조원은 장기미지급이자를 포함한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7.1조원, 장기미지급금 13.3조원이다.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표상 재정운영순원가는 510.3조원이며 전년 대비 34.2조원이 증가하였다. 국세수익, 부담금수익, 제재금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등은 465.2조원,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45.1조원이다.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는 감사원 검사를 거쳐, 5월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그림 4 연도별 재정운영순원가와 비교환수익

(단위: 조원)



출처: 2013~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02 2023년 국가회계교육 사업 추진

국가회계교육 사업은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와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가회계 업무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사업은 2017년까지 기획재정부가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실시하여 왔으나, 2018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 운영과 전문적 교육 콘텐츠 제공을 위해 국가회계 분야의 전문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추진하게 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국가회계 전문교육, 국가회계의 활용, 찾아가는 국가회계교육, 온라인 교육 서비스 제공 등 수강생 중심의 교육 운영과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국가회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공무원의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2023년 국가회계교육’ 사업에서 추진하는 5대 중점 실행 과제와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을 소개한다.

가. 교육 목표

국가회계교육은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업 중 하나로, 국가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 증진과 업무역량 강화를 목표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 [그림 3]과 와 같이 5가지 중점 실행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교육생 니즈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정과 커리큘럼,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림 3 2023년도 국가회계교육 중점 실행 과제

비전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운영	
미션	국가회계 전문기관으로서 센터의 전문성 발휘를 통해 공무원 회계 업무역량 강화 및 국가회계 활용 가능성 제고	
2023 년도 중점 실행 과제	1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교육 서비스 도입 국가회계이론의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과정을 온라인 교육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자가 학습 지원
	2	ESG 경영 동참을 위한 탄소 배출 절감 교육 환경 구축 개인용 컵 준비, 대중교통 이용 요청, 모바일 MMS안내문 대체 등으로 교육 운영 중 발생하는 에너지 소비 절감
	3	신규 외부 강사 섭외 및 강의 과목 재배치 전문 외부 강사 추가 섭외 및 기존 강사 강의 과목 재배치를 통한 학습자 만족도 제고
	4	실무 교육을 강화한 집합교육 커리큘럼 운영 신규 결산담당자들을 위한 실무 교육 시간 확보 운영
	5	내·외부 온라인 회계교육 콘텐츠 공유 지속 KOCW, K-MOOC 등 외부 무료 공개 온라인 교육 자료 접근 지원

나. 중점 추진 과제

1)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교육 서비스 도입

학습자들의 다양한 교육 니즈와 교육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혼합형 학습(Blended Learning) 교육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우선 첫 시도로 국가회계이론 중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의 마지막 부분인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동영상 교육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는 회계를 처음 접하는 초보자들이 꼭 들어야 하는 과정이지만 교육 시간 대비 방대한 내용으로 인해 마지막 실습이 충분한 연습 시간을 주고 진행되지 않아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실습을 제외한 본 과정은 집합 교육 중에 수강하고, 실습 과정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전문 강사의 안내에 따라서 차근차근 해볼 수 있도록 과정을 구성할 예정이다. 실습 과정은 앞에서 배운 내용 전체를 리뷰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제도 기초 과정을 전반적으로 복습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ESG 경영 동참을 위한 탄소 배출 절감 교육 환경 구축

전 세계가 주목하는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경영의 한 축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정책에 동참하기 위하여 탄소 절감 교육 환경을 구축할 예정이다. 먼저 교육 참석자들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한 교육장 이동과 개인 텀블러 지참을 권유할 예정이며,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기존에 종이로 제공하던 교육 안내문을 MMS안내문으로 대체하여 차수당 100장 이상 소요되던 A4 용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3) 신규 외부 강사 섭외 및 강의 과목 재배치

센터가 처음 국가회계 전문교육을 운영하였던 2018년에 총 4명이었던 국가회계교육 외부 강사를 2023년에는 총 8명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로 2명이 합류하여 더 다양한 전문가에게 국가회계 강의를 수강할 수 있게 되었다. 외부 강사 풀은 단순히 인원만 많아지는 것이 아닌, 과정별 강사 평가를 반영하여 교육생들이 선호하는 강사 위주로 선발하고 교재 개발과 강의를 진행하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 적성에 맞게 과목을 재배치하여 더 나은 강의와 내용으로 교육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

4) 실무 교육을 강화한 집합교육 커리큘럼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잠시 중단되었던 중앙부처 결산담당자 역량강화 집합교육이 2022년 11월에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해당 집합교육은 결산 업무의 기본지식 습득과 함께 오랜만에 만난 담당자들의 친화력을 높이고 상호 이해를 강화시킬 수 있는 커리큘럼 위주로 구성하였다. 전년도에 참여한 참석자들을 분석한 결과, 신규 결산 업무 담당자가 늘어나고 평균 연령이 낮아지는 점을 고려하여 올해 집합교육은 결산 실무 내용을 전년 대비 강화한 커리큘럼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참석자들의 상호이해와 실무 교육이 균형을 이룬 과정으로 구성하여 참석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5) 내·외부 온라인 회계교육 콘텐츠 공유 지속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국가회계 전문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를 위하여 다양한 온라인 교육 동영상상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에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 국민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K-MOOC와 KOCW 홈페이지를 연동하여 대학별 회계 수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는 방법을 국가회계교육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해당 내용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 안내

2023년도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6월부터 11월까지 총 13차에 걸쳐 실시 예정이다. 본 교육은 국가회계에 관심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가회계와 관련한 공공기관 종사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교육신청과 참여가 가능하다. 2019년도까지는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하였으나, 2020년도와 2021년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전체 교육 과정을 진행하였다. 올해는 지난해 이어 집합교육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여 다양한 교육 방식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킬 예정이다.

국가회계 전문교육의 교육과정은 국가회계이론, 국가회계실무, 재무결산실무,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으로 구성된다.

국가회계이론 과정은 2일간 진행되며, 1일 차에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의 기초 원리와 이해, 재무제표 만들기 실습, 국가회계제도의 이해로 구성된다. 2일 차에는 세입세출거래와 복식부기, 결산조정과 발생주의에 관한 이론과 실습을 통해 처음 접하면 어려울 수 있는 국가회계의 기초적인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국가회계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을 주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국가회계의 업무유형별 유의사항에 대한 이해와 실습, 국가재무제표를 통한 국가재정상태의 이해 등 조금 더 실무적인 과정으로 회계업무 담당자의 업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또한 국가회계실무 과정은 수입·지출 과정과 국유·물품 과정을 구분하여 실시함에 따라 교육생이 담당 업무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다. 물론 필요할 경우에는 두 과정 모두 수강이 가능하다. 올해는 국유·물품에 대한 오류사례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교육 수요가 많아질 것을 대비하여 국유·물품 차수를 1회 늘려서 진행할 예정이다.

재무결산실무 과정은 중앙부처 재무결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으로 10월에 총 2회(회당 2일) 실시된다. 본 과정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대비하여 국가재무결산의 이해, 수정전자산표 마감 전 유의사항, 내부거래실무, 결산조정분개와 결산보고서 작성방법 등을 본격적인 결산에 앞서 상세히 학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가회계의 활용 과정은 발생주의 재무정보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설된 1일차 교육 과정으로, 국가자산과 부채의 특성 및 이해, 프로그램세입과 프로그램원가 등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 이 과정은 국가회계의 기본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이해가 용이하기 때문에 국가회계이론 과정을 먼저 수강하고 듣는 것을 추천한다.

추가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부처에 센터의 강사들이 직접 찾아가서 교육을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가회계 교육'도 진행하고 있으며, 국가회계 전문교육이 개설되지 않는 시점에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는 국가회계이론기초, 국가회계실무 동영상 교육들도 국가회계교육포털에서 누구나 수강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회계교육포털(<https://www.kipf.re.kr/edu/>)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 2023년 국가회계 전문교육 일정(예정)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예정)	기간
1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6. 21.(수)-6. 22.(목)	2일
		국가회계실무	6. 23.(금)	1일
2차	광주	국가회계이론	6. 28.(수)-6. 29.(목)	2일
		국가회계실무	6. 30.(금)	1일

표 1 의 계속

차수	지역	교육과정	일정(예정)	기간
3차	대전	국가회계이론	7. 5.(수)~7. 6.(목)	2일
		국가회계실무 (국유·물품)	7. 7.(금)	1일
4차	부산	국가회계이론	7. 19.(수)~7. 20.(목)	2일
		국가회계실무	7. 21.(금)	1일
5차	제주	국가회계이론	7. 26.(수)~7. 27.(목)	2일
		국가회계실무	7. 28.(금)	1일
6차	대구	국가회계이론	8. 2.(수)~8. 3.(목)	2일
		국가회계실무	8. 4.(금)	1일
7차	서울	국가회계이론	8. 23.(수)~8. 24.(목)	2일
		국가회계실무 (국유·물품)	8. 25.(금)	1일
8차	세종	국가회계이론	9. 6.(수)~9. 7.(목)	2일
		국가회계실무	9. 8.(금)	1일
9차	무관	국가회계이론	9. 13.(수)~9. 14.(목)	2일
		국가회계실무 (국유·물품)	9. 15.(금)	1일
10차	무관	국가회계이론	9. 20.(수)~9. 21.(목)	2일
		국가회계실무	9. 22.(금)	1일
11차	세종	재무결산실무	10. 12.(목)~10. 13.(금)	2일
12차	무관	국가회계의 활용	10. 19.(목)	1일
13차	무관	재무결산실무	10. 26.(목)~10. 27.(금)	2일

※ 본 교육은 내부 사정에 따라 장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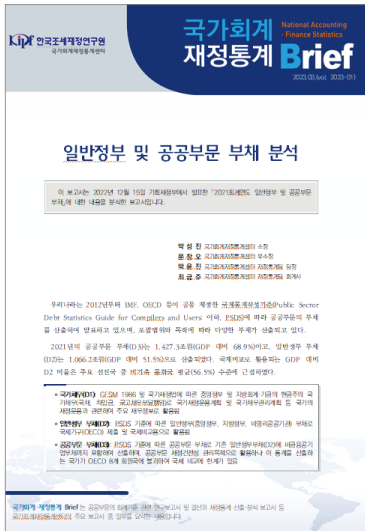


재정통계 동향



-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 2023년 공기업 · 준정부기관 지정현황 및 결산 일정

01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 발간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분석」에 대한 국가회계·재정통계 Brief(2023-01)를 발간하여 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이 Brief는 2022년 12월 1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를 기반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존 보고서 및 보도자료는 내용이 많고, 이해가 어려울 수 있어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기존 내용에 적자성 국가채무 추세 분석, 국제동향 등 추가 분석한 사항을 반영하였다.

가. 부채의 종류

2021년 정부의 포괄범위에 따른 부채(총부채¹⁾) 산출 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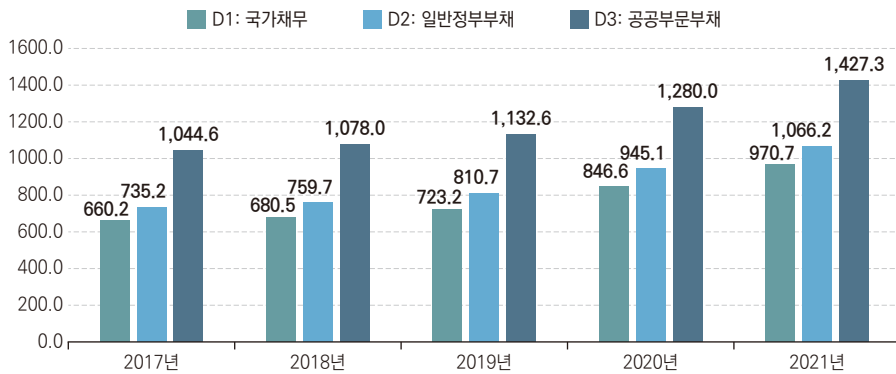
유형	2021년 규모 (GDP 대비)	포괄범위	산출기준	활용
국가채무(D1)	970.7조원 (46.9%)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회계·기금	「국가재정법」, 현금주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
일반정부 부채(D2)	1,066.2조원 (51.5%)	D1 + 비영리공공기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PSDS, 발생주의	국제 비교 (IMF, OECD)
공공부문 부채(D3)	1,427.3조원 (68.9%)	D2 + 비금융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전력공사 등)	PSDS, 발생주의	공공부문 재정건전성 관리

1) 총부채(Gross Debt Liabilities)란 채무상품의 형태를 띤 모든 종류의 부채로, 채무상품(Debt Instruments)은 채무자가 미래의 특정시점에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로 채권, 차입금, 미지급금 등으로 구성

우리나라 부채 종류별 총부채 금액의 최근 5개년 추세는 다음과 같으며, 국가 간 재정건전성 비교 기준이 되는 D2는 2017년 735.2조원에서 2021년 1,066.2조원으로 증가(연평균 9.7%)하였고, D3는 1,044.6조원에서 1,427.3조원으로 증가함(연평균 8.1%). 2020년 이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 확대가 2021년까지 이어지면서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그림 1 부채 종류별 총부채의 5개년 추세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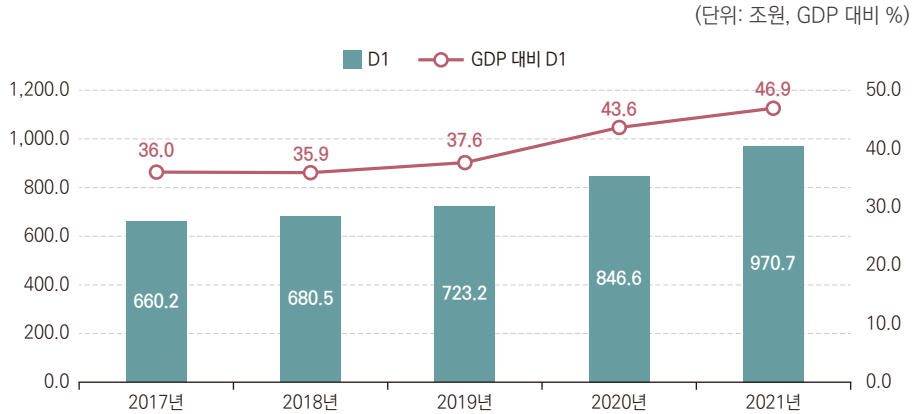
나. D1 분석

2021년의 D1은 970.7조원(GDP 대비 46.9%)으로 전년 대비 124.1조원(3.3%p)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 적자보전(85.6조원) 및 외환시장 안정(5.8조원) 등을 위한 국고채 증가(116.8조원)에 주로 기인함

☞ D1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용으로 크게 증가*한 이후 2021년까지 그 증가 수준이 비슷하게 유지됨

* 2018년 20.3조원(△0.1%p), 2019년 42.7조원(1.7%p), 2020년 123.4조원(6.0%p), 2021년 124.1조원(3.3%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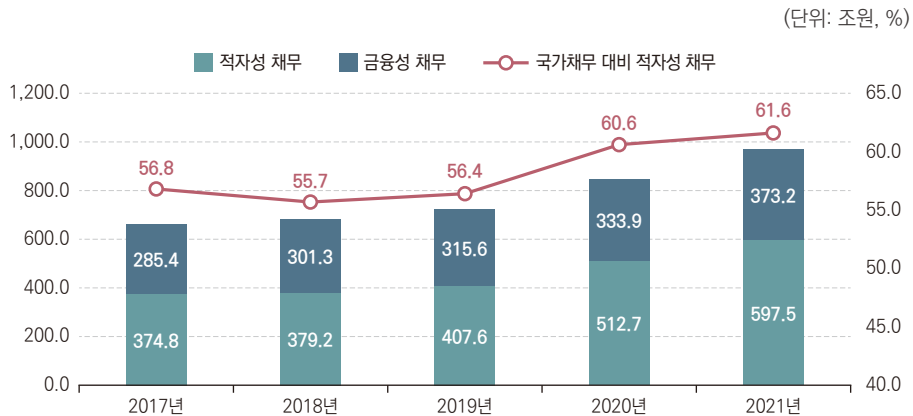
그림 2 D1 현황 및 추세 분석



출처: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2023년 2월호, VOL.109, p. 28.

☞ D1은 적자성과 금융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며, 2021년 적자성 국가채무의 비중은 61.6%로 2019년 이후부터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임

그림 3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 추세 분석



* 적자성 채무: 조세 등 국민 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

** 금융성 채무: 자산매각,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체 상환이 가능한 채무

출처: e-나라지표(<https://www.index.go.kr>, '국가채무 추이'로 조회), 검색일자: 2023. 3. 17.

다. D2 분석

1) 증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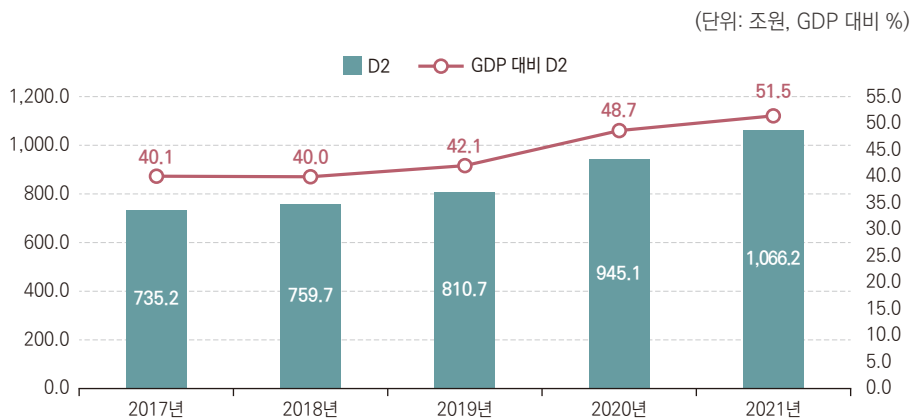
2021년의 D2는 1,066.2조원(GDP 대비 51.5%)으로 전년 대비 121.1조원(2.8%p) 증가하였으며, 증가 원인을 주요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중앙정부 부채(1,016.2조원)는 전년(898.4조원) 대비 117.8조원 증가함. 일반회계 적자보전·외환시장 안정 등을 위한 국고채 및 공채 등 채무증권이 100.0조원 증가하였으며 주택도시기금 청약저축 등 차입금이 11.9조원 증가하였음

지방정부 부채(69.9조원)는 전년(63.0조원) 대비 6.9조원 증가함.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 차입금 증가 등으로 부채가 7.4조원 증가한 반면, 교육자치단체는 차입금 및 금융리스부채 감소로 부채가 1.7조원 감소함

D2는 2018년 말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2020년에 시작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확장적 재정운용의 영향으로 최근 2년간 부채 증가폭은 9.4%p로 크게 증가함

그림 4 D2 현황 및 추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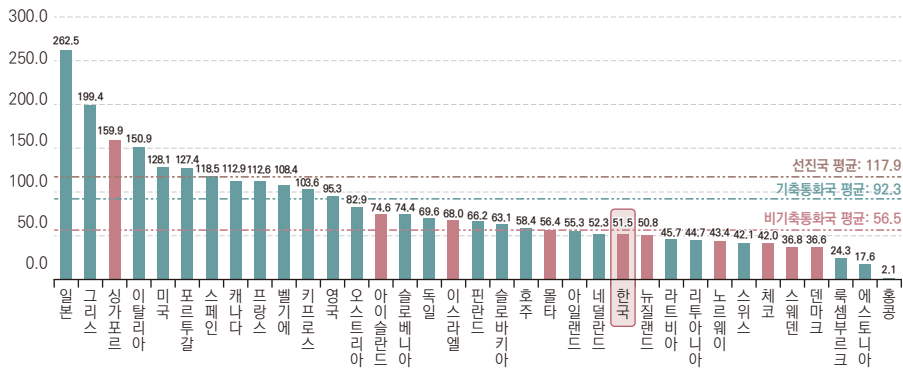


2) 국제동향

D2는 국가 간 비교 시 주로 사용하는 지표이며, IMF, 『Fiscal Monitor』, Advanced Economies(이하 ‘선진국’이라 함) 자료를 이용해 GDP 대비 D2 비율을 국제 비교해보면 우리나라(51.5%)는 선진국 전체 평균(117.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선진국 비기축통화국 평균(56.5%)과 비교할 때 거의 근접한 수준을 보이며 지속적인 재정건전성 관리가 필요함

그림 5 일반정부 부채(D2) 국제 비교

(단위: GDP 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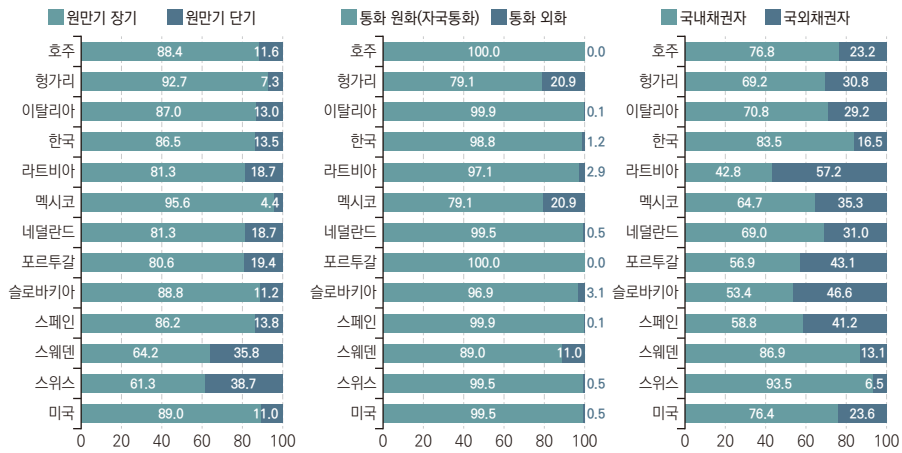


출처: IMF, 『Fiscal Monitor』(2022.10.), p. 50 (Table A7. Advanced Economies: General Government Gross Debt, 2013-27), 한국은 정부 작성 일반정부 부채(D2) 기준, 기축통화국, 비기축통화국 평균은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집계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2.12.15.를 인용

한편, 부채 유형별 추가 분석을 위해 OECD 국가의 만기별(장기/단기), 통화별(자국/외화), 채권자 거주지별(국내/국외) 비중을 비교해본 결과 한국은 장기부채(86.5%), 자국통화(98.8%), 국내채권자 보유(83.5%) 비중이 높아 질적 측면에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6 일반정부부문 부채별(D2) 비교

(단위: %)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원만기별) 대부분 장기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장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로 95.6%인 반면, 단기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스위스로 38.7%임. 단기부채가 많으면, 유동성 위험이 높아지므로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상응하는 단기 금융자산 보유를 통한 유동성 관리가 필요함

(통화별) 대부분 원화(자국통화)부채의 비중이 더 높으며, 원화(자국통화)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호주, 포르투갈로 100%인 반면 외화부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멕시코와 헝가리로 20.9%의 비중을 보임. 외화부채가 많으면, 환위험이 높아지게 되며 이에 상응하는 외화자산을 보유하는 등 환위험 관리가 필요함

(채권자 거주지별) 국내채권자가 보유하는 부채 비중이 더 높은 편이나, 그렇지 않은 국가도 일부 있음. 국내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93.5%이며, 국외채권자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57.2%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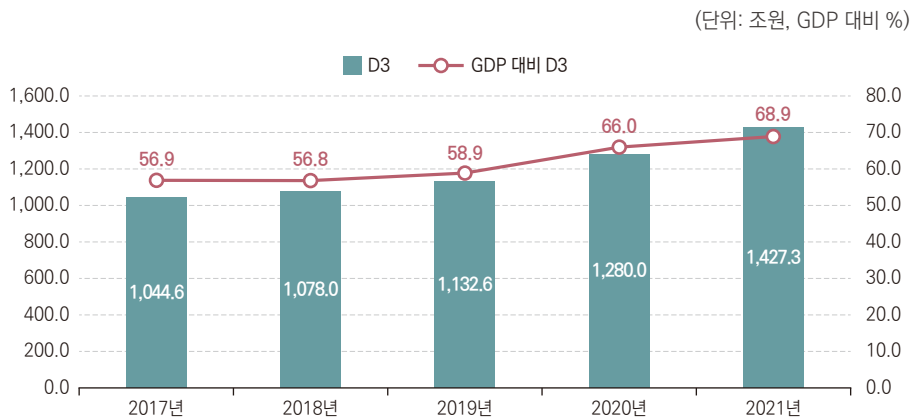
라. D3 분석

1) 증감 분석

2021년의 D3는 1,427.3조원(GDP 대비 68.9%)으로 전년 대비 147.4조원(2.9%p) 증가함. 공공부문 부채 증가는 일반정부(D2) 증가(121.1조원)에 기인하며, 비금융 공기업은 전년 대비 31.6조원 증가함. 비금융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전 및 발전자회사 11.6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9.0조원, 한국가스공사 5.9조원 등으로 주로 차입금 및 공사채 증가에 기인함

D3의 GDP 대비 비율은 2019년 이후부터 증가하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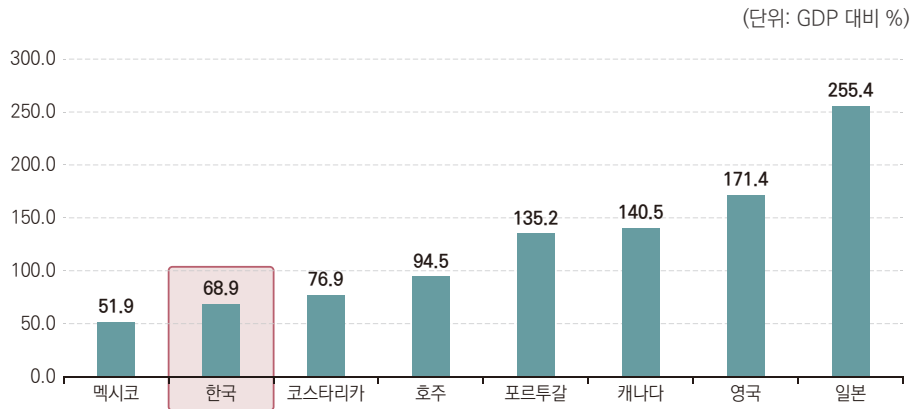
그림 7 D3 현황 및 추세 분석



2) 국제동향

우리나라의 D3는 OECD에 공공부문 부채를 공시하는 8개국 중 2번째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그림 8 D3 국제 비교



출처: OECD.Stat Quarterly Public Sector Debt



02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 및 결산 일정

가.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현황

기획재정부가 2023년 1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총 347개 기관을 2023년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관리대상이 되는 기관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에 지정된 기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올해에는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2022년 8월)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 분류기준이 최초로 상향*적용되어 정원 300명 미만(2022년 말 기준)인 43개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지정되었다.

* (정원) 50명 → 300명 이상, (수입액) 30억원 → 200억원 이상, (자산) 10억원 → 30억원 이상

** 공기업(4):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준정부기관(3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이번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분류변경 사항은 2023년부터 적용된다.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이 변경된 4개 항만공사 및 독립기념관 등 39개 준정부기관은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주무부처로 변경되고 2023년 결산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결산서의 감사원 및 국회 제출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에 운영상 자율성이 확대되고 주무부처의 권한 및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1 2023년도 공공기관 지정현황

구분	2022년	2023년	증감	지정 결과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2	△4			△4
• 시장형	15	13	△2			△2
• 준시장형	21	19	△2			△2
② 준정부기관	94	55	△39			△39
• 기금관리형	13	11	△2			△2
• 위탁집행형	81	44	△37			△37
③ 기타공공기관	220	260	+40	+1	△4	+43
계	350	347	△3	+1	△4	-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1)	특허청	한국특허기술진흥원	기타공공기관
해제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원	지정 해제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유형 변경 (±43)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준시장형 공기업 → 기타공공기관
		울산항만공사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언론진흥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교육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재단법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표 1 의 계속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유형 변경 (±43)	기획재정부	한국재정정보원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타공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보육진흥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해양수산부	창업진흥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금융위원회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방송통신위원회	서민금융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시청자미디어재단	
	국가보훈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기상청	국립기념관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청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특허청			

출처: 기획재정부, 「2023년 공공기관 지정」, 보도자료, 2023. 1. 30.

나.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공공기관 중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주무기관의 장, 사원총회 등의 승인 의결로 확정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 후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및 K-IFRS에 따라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감사원규칙」에 따라 회계감사인(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기관의 장에게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한 후 3월 말까지 승인을 얻어 확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준정부기관(공기업 중 사원총회 의결기업 포함)은 결산서를 확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와 주무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제출한 결산서를 승인·확정하여 5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서에 감사원 결산 검사 결과(7월 31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 보고 후 국회 제출(8월 20일)하여야 한다.

표 2 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일정 요약

결산서 제출	결산서 승인	감사원 제출	감사원 → 기획재정부 송부	국회 제출
2월 말	3월 말	5월 10일	7월 31일	8월 20일

국가회계
재지통계



공익법인회계 동향



- 2022년 세제개편 후속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01 2022년 세제개편 후속 공익법인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



정부가 지난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2022년 개정 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023. 1. 18.)하였으며 입법예고, 부처 협의 등을 통한 수정 후 2월 21일 국무회의를 통과, 2월 28일 공포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 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 등을 개정하였다.

가. 의무이행 보고 공익법인 합리화(「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은 공익목적활동 수행,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 공개, 수익사업의 직접 고유목적사업 지출의무 등 각종 의무사항이 있으며 의무의 이행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안에서는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한하여 의무이행여부 보고의무를 면제하였다. 일반적으로 규모가 영세한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기부금을 받지 않는 경우 의무이행여부 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다.

현 행	개 정 안
의무이행 여부를 보고하는 공익법인 • (대상)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공익법인등* * §39①1호 각목: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학교, 의료법인, 종교법인, 기부금단체 - (적용 제외) 종교법인 <추 가>	적용 제외 공익법인 추가 • (좌 동) - 해당 사업연도에 기부금 모금액이 없는 어린이집·유치원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3. 1. 18.

나.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 신고기한 합리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4 제11항)

공익법인은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지출을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으로 고시한 경우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경우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안은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하도록 신고기한을 합리화하여 공익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신고기한 합리화 •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익법인등으로 고시한 경우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3. 1. 18.

다. 합병에 따른 공익법인 지분 증가 시 증여세 과세기준 보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공익법인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제한이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합병으로 인해 지분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을 주식 초과보유 기준일로 명확히 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p>공익법인 주식 초과보유 계산 기준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매·출연) 취득일 • (유상증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li style="padding-left: 20px;">*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 (감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의결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 폐쇄일 <li style="padding-left: 20px;">*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합병에 따른 기준일 추가</p> <div style="border-left: 1px solid black; border-right: 1px solid black; border-bottom: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중 주주명부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 <li style="padding-left: 20px;">* 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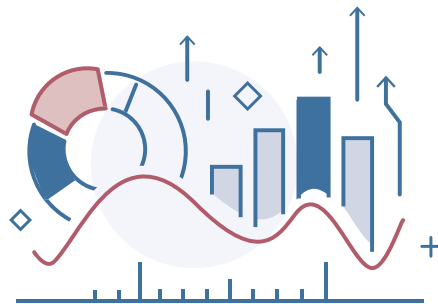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3. 1. 18.

라. 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3항)

총자산가액이 1천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4개 사업연도의 회계감사를 받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회계감사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위해 도입된 지정감사인 제도는 공익법인의 감사보수 증가의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지정감사인의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정감사인을 배제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현 행	개 정 안
<p>지정감사인 배제 사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보고서 부실기재 혐의로 공소가 제기된 자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감리 결과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국세청장 등에 통보된 자 <p>〈추가〉</p>	<p>지정감사인 배제 사유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보수 등 감사계약 조건에 이견이 있어 공익법인 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자로서 감사보수가 과도하다고 기재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p>* 국세청장에게 위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3의2②)</p>

출처: 기획재정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상세본」, 2023. 1. 18.



국가회계
재지통계



센터 동향



- 센터 연구 진행 동향
-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 일본 정부회계학회 주최 정부회계 비교연구 심포지엄 발표
-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CCA) 온라인회의 참석
- 2023년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센터 연구 진행 동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는 2023년부터 국가회계연구TFT를 신설하여 센터 내 축적한 자료와 역량을 활용해 회계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부서의 회계 연구를 지원하여 연구의 저변과 폭을 확장하고자 한다.

매해 정부를 비롯하여 산학연과 여러 건의 회계 관련 연구과제를 진행하였으나, 자체 역량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올해부터는 자체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센터 내 부서 간 협업을 통하여 과제를 발굴하고 협업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이에 국가회계연구TFT는 몇 가지의 과제를 발굴하여 연구를 진행 중이며, 진행 중인 과제로는 ① 회계 및 통계정보의 스톡-플로우 조정 활용 연구(윤영훈),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이정미), ③ 국가회계기준, 재정통계기준 및 SNA에 따른 정부통계 비교 연구(윤영훈), ④ 재정사업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양은주), ⑤ 국가부채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양은주), ⑥ 국제기구의 기후대응 보고 현황 및 추진 방향(이정미, 임지윤)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①과 ②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향후 국가회계연구TFT에서는 센터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하고 완결된 연구를 요약 정리하여 게재할 예정이다. 연구과제에 관심이 있거나 제안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기탄없는 참여를 희망한다.

표 1 2023년 3월 기준 국가회계연구TFT 과제 목록(예정)

NO.	구분	연구과제명	연도	연구자
1	자체	회계 및 통계정보의 스톡-플로우 조정 활용 연구	2023	윤영훈
2	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	2023	이정미
3	자체	국가회계기준, 재정통계기준 및 SNA에 따른 정부통계 비교 연구	2023	윤영훈
4	자체	재정사업 원가정보 활용방안 연구	2023	양은주
5	자체	국가부채가 국가신인도에 미치는 영향	2023	양은주
6	자체	국제기구의 기후대응 보고 현황 및 추진방향	2023	이정미, 임지윤

1. 회계 및 통계정보의 스톡-플로우 조정 활용 연구(윤영훈)

스톡-플로우 조정(Stock-flow adjustment, SFA)은 일정 기간 동안 정부 채무의 변화와 정부 적자(또는 흑자)의 차이를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SFA는 금융자산의 순취득, 채무 조정과 통계적 불일치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적자는 채무 수준의 증가에 기여하고, 흑자는 채무의 수준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정부 채무의 변화에는 다른 요인들도 반영된다. 양(+의 SFA)는 정부 채무가 연간 적자보다 더 많이 증가(또는 흑자보다 적게 감소)함을 의미한다. 반대로 음(-)의 SFA는 정부 채무가 연간 적자보다 적게 증가(또는 흑자보다 더 많이 감소)함을 의미한다. SFA가 매우 큰 국가는 해당 세부 항목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더라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또한 SFA는 작지만, 큰 값의 세부 항목이 상쇄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SFA의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금융자산의 순취득이다. 금융자산 거래는 적자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채무의 증가 또는 감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조정이라는 범주로 다시 세 가지 하위 항목으로 나눌 수 있으며, ① 파생상품 등 국채의 정의에서 제외되는 채무, ② 정부 채무가 액면가로 측정된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명목가치 초과 또는 미만 부채의 발행·이자·상환, ③ 외화로 표시되는 정부 채무에 대한 환율 변동 영향의 반영과 함께 일반정부 범위의 재조정에 따른 채무 규모의 변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세 번째는 통계적 불일치 항목으로 데이터 출처가 다양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반영하며, 이는 또한 데이터 품질의 문제로도 지적될 수 있는 항목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많은 국가가 과거 지속적인 양의 SFA를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의 채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축적된 적자보다 더 많이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SFA의 개별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SFA가 국가 채무와 재정수지의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또한 통계적 불일치 항목으로 분류되는 SFA 세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의 재정 투명성과의 관계도 검토한다. 특히 SFA에 대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SFA가 다른 나라에 비해 어떤 특징이 있는지 분석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이정미)

2022년 1월 시행된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따라 정부는 2023회계연도 예산안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의 첨부 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예산서 작성의 주체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각 기금관리 주체이며, 작성대상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세부 사업 단위로 작성하고, 감축 효과는 내역사업 별로 분석하였다. 작성항목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 분석이다. 기대효과는 해당 사업 추진을 통해 발생하는 긍정적 영향을 적시하고, 성과목표는 온실가스 감축효과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며, 이에 따른 효과 분석은 사업 유형에 따라 정량 분석과 정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예산서에 포함된 대상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유형에 따라 정량 사업과 정성 사업, R&D사업이다.

국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기금운용계획 포함)의 대상 사업을 살펴보면, 13개 중앙부처에서 제출한 288개로 전체 예산규모는 11조 8,828억 원이며, 회계별로 보면 예산사업이 95개 사업, 5조 9,465억 원, 기금사업이 193개 사업, 5조 9,363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출된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은 정부의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6%에 불과하며, 기후대응기금 등 4개 기금이 총지출 예산 대비 30~97%를 나타낼 뿐 기타 회계와 기금은 1~5%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기후대응기금은 총지출예산의 97.7%,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7.7%, 전력산업기반기금 56.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34.2%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2023년 온실가스 감축예산과 총지출 예산 비중 검토

(단위: 개, 억원)

구분	예산	사업 수	2023년 온실가스 감축 예산안	예산 비율	2023년 총지출 예산	해당 예산 대비 온실가스 감축 예산 비중
합계	총지출	288	118,828	100.0%	6,390,420	1.86%
	회계 소계	95	59,465	50.0%	4,413,231	1.35%
	일반회계	41	7,330	6.2%	3,785,418	0.19%
	특별회계	54	52,135	43.9%	627,813	8.30%
	- 에너지 및 자원사업 - 특별회계	21	38,860	32.7%	57,360	67.75%
회계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	1,780	1.5%	76,078	2.34%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	8,450	7.1%	126,551	6.68%
	- 소재부품장비 - 경쟁력강화특별회계	2	134	0.1%	23,425	0.57%
	- 교통시설특별회계	2	467	0.4%	148,320	0.31%
	- 환경개선특별회계	13	2,444	2.0%	53,971	4.53%
	기금 소계	193	59,363	50.0%	1,977,189	3.00%
	기후대응기금	148	23,767	20.0%	24,317	97.74%
	전력산업기반기금	38	13,328	11.2%	23,563	56.56%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	19,010	16.0%	55,560	34.22%
기금	수산발전기금	1	363	0.3%	6,699	5.42%
	주택도시기금	1	2,046	1.7%	333,085	0.61%
	축산발전기금	1	769	0.7%	9,441	8.15%
	관광기금	1	80	0.1%	10,639	0.75%

주: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2023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제출로 처음 시작한 제도이나 온실가스 감축은 전 지구적 당면과제로서 향후 환경 관련 다른 제도 및 조치들과 융합하여 빠르게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의 현황을 타 지자체 및 해외사례를 검토하여 예산서의 포괄범위와 예산서 분류 및 태깅의 과정을 검토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주 제: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결산지원제도 분석을 중심으로(양은주·윤영훈)

일 시: 2023년 3월 7일(화) 9:30~17:30, 2022년 3월 8일(수) 9:30~17:30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3층 대강당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2023년도 기본연구과제 착수보고회를 3월 7일과 3월 8일 이틀에 걸쳐 개최하였다. 이 중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양은주 초빙연구위원과 윤영훈 초빙연구위원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방안: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 발생원인 및 결산지원제도 분석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연구과제에 연구진으로 참여하였다. 해당 과제는 7월 중간보고회, 10월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주제발표 내용

- 우리나라는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책임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1년¹⁾부터 본격적으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
-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순자산에 관한 산출정보를 통해 경제적 실질에 기반을 둔 재정상태를 파악하고 재정건전성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재무분석 정보의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님
- 국가재무제표는 재정활동의 결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 기록 및 순환과정의 정리함으로써 각 분야의 의사결정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함

1)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 제정, 2009년부터 발생주의 방식으로 회계처리 시행, 2011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에 기반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 제출

2021년 발간된 국제공공부문재무회계책임성지표(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²⁾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총 49개국이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회계 보고를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83개국으로 증가할 예정

- 다만, 이러한 발생주의 회계정보의 유용성은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반드시 전제되어야만 함
- 재무제표의 회계품질이 높을수록 정보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Feng et al. 2015; D’Mello et al. 2017)
-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국가회계정보의 객관성 및 신뢰성을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1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일반원칙) 국가의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발생주의 방식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회계처리는 신뢰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2. 재무제표의 양식, 과목 및 회계용어는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3. 중요한 회계방침, 회계처리기준, 과목 및 금액에 관하여는 그 내용을 재무제표에 충분히 표시하여야 한다.
4.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 및 추정(推定)은 기간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기간마다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계정과목과 금액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실용적인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 회계처리는 거래 사실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발생주의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국가재무제표의 회계투명성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도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회계오류 발생규모는 유의하게 감소하지 않아 여전히 이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미흡하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는 2011회계연도부터 공식적으로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으나,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적지 않은 규모의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

2) IFAC, 「International Public Sector Financial Accountability Index: 2021 Status Report」 2021. 1.

- 정부는 발생주의 국가회계를 정착시키고, 국가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중앙관서 대상 재무결산 중간점검(10월), 결산 담당자 대상 맞춤형 교육, 주요 오류사례집 제공 등을 통해 오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
 - 해당 제도가 실제로 국가재무제표의 회계오류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지난 12년간의 국가회계시스템 및 국가결산체계 전반을 되돌아보고, 현행 체계에서 회계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가재무제표의 회계품질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발생주의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를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발생 원인을 심층적으로 분석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결산지원제도에 대하여 회계오류 유형별로 효과성 확인
 - 현재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회계오류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회계오류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검토



일본 정부회계학회 주최 정부회계 비교연구 심포지엄 발표

주 제: 일본과 한국의 정부회계개혁: COVID19하의 정부회계 실무 비교

일 시: 2023년 2월 28일(화) 14:00~17:00

장 소: 일본 와세다대학교 와세다 캠퍼스 3호관 306호실, 온라인 참여

사회자: 고바야시 마리(일본 와세다대학교 교수, 일본 정부회계학회 회장)

발 표:

- ① Government Accounting in Times of Crisis – Korean Experience
– 박성진(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
- ② Korean Local Government Accounting Practices under Hard Situations including COVID-19
– 강인재(재정성과연구원 원장)
- ③ Questionnaire on COVID-19 Pandemic and Correspondence of Local Government in Japan
– 시바켄지(일본 간사이대학교 교수)

일본 정부회계학회는 2023년 2월 28일(화), 일본 와세다대학교에서 ‘정부회계 비교연구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대면과 온라인 참여가 병행된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그 이후 재정관리에서의 정부회계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의 지방정부회계 및 국가회계, 그리고 일본의 지방정부회계 사례에 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은 본 심포지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출’(above-the-line measures)과 ‘수지 외 재정지원’(below-the-line measures)의 한국-일본 간 비교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정관리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보조금과 소득 및 고용지원 정책 등을 위한 ‘직접적 재정지출’에 상대적으로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재정적 대응을 고려하여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대출, 보증지원 등 ‘수지 외 재정지원’을 폭넓게 활용한 우리나라의 재정적 대응의 결과로 이어지는 잠재적 우발부채 관리의 중요성을 논의하였다.



정부회계 비교연구 심포지엄(2023. 2. 28., 일본 와세다대학교)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CCA) 온라인회의 참석

주 제: 공공부문의 지속가능성 보고(목적, 범위 및 원리)

일 시: 2023년 2월 24일(금) 22:30~25일(토) 01:00

장 소: 온라인 회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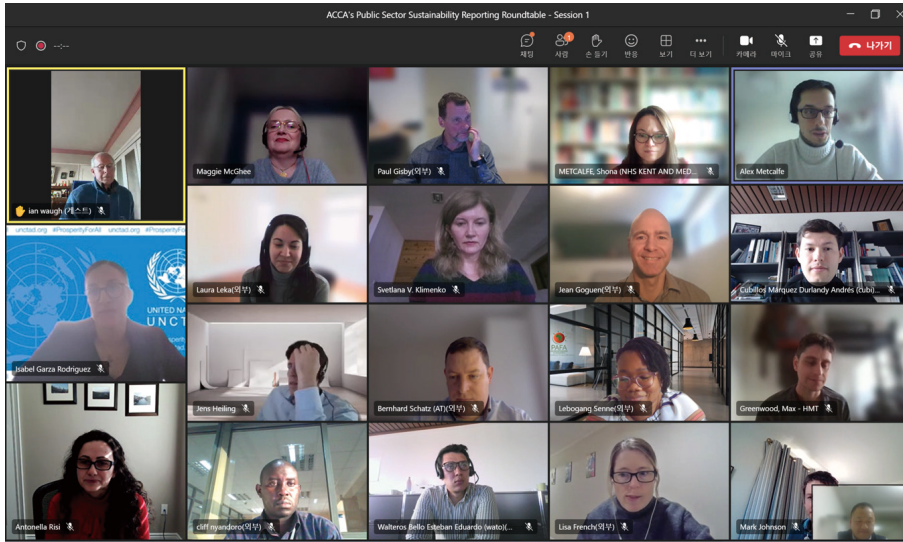
사회자: Maggie McGhee(Executive Director for Strategy and Governance, ACCA)

영국 공인회계사협회(이하 'ACCA')¹⁾는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위원회(IPSASB)가 진행 중인 세 가지 연구과제('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기후 관련 공시', '자연자원-비재무정보 공시')와 관련된 배경 토의를 위한 온라인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는 두 차례 이뤄졌으며, 첫 번째 회의는 ACCA의 Executive Director for Strategy and Governance인 Maggie McGhee의 주제로 2월 24일(금) 22:30~25일(토) 1:00(한국시간)에 개최되었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박성진 소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① 공공부문만을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가 필요한 이유, ② 기업회계기준과 달리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야 하는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정보의 특성, ③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에서 '인사이드 아웃'과 '아웃사이드 인'의 두 관점이 모두 요구되는 이유, ④ 기후변화 관련 정보 공시가 최우선 과제로 논의되어야 하는 이유, ⑤ 지속가능성 정보의 목적적합성(relevance)과 비교가능성(comparability)의 균형을 이루는 접근의 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1) 영국 공인회계사협회(Association of Chartered Certified Accountants, ACCA)

두 번째 온라인 회의는 3월 21일(금) 22:30(한국시간)에 공공부문 지속가능성 보고를 위한 '기축 보고체계(anchor framework)의 선정과 실행'을 주제로 개최되었다.



영국 공인회계사협회 회의(2023. 2. 24., 온라인)

2023년 제1차 자체평가위원회 개최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이하 '센터')가 지난 3월 15일에 센터의 2023년 자체평가 시행계획과 사업계획을 보고하고자 2023년 제1회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는 센터의 정책연구와 사업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센터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이다.

이번 자체평가위원회는 서울지방조달청에서 대면회의로 진행되었으며, 외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전규안 교수(송실대), 지현미 교수(계명대), 윤재원 교수(홍익대), 박세환 상임위원(한국회계기준원), 김동수 상무(삼일회계법인)가 참여하였으며, 센터에서는 박성진 소장, 문창오 부소장, 진태호 국가회계팀장, 박윤진 재정통계팀장, 윤영훈 국가회계연구TFT 팀장이 참여하였다.

자체평가위원회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2023년 자체평가 시행계획 안건에서는 2023년 센터 자체평가 기본운영 방향과 자체평가 대상 사업 및 평가지표·측정 방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센터의 사업목적, 기대효과, 달성목표 및 성과지표에 공공부문 발생주의 회계제도 관련 재무정보 산출 외, 센터 전체 사업 내용 반영 필요

나. 센터의 업무 수행성과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성과 확산 등 대외 홍보 방안 마련 필요

또한, 2023년 사업계획 안건에 대해 국가회계 전문인력 양성,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독특한 거래방식을 반영한 회계처리 대안 제시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논의하였다. 수렴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회계 전문인력 양성이 중장기 과제로 언급되는 바, 수강생 대상 전문자격(인증) 등의 유인책 마련 필요

나. 공인법인 결산서류 등 재무정보 분석에서 더 나아가 정보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필요

다. 한국가스공사 미수금 회계처리 등 독특한 거래구조를 지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특성을 파악하여 선제적인 회계처리 대안 마련 필요

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점검 시, 신속 점검 차원에서 기관에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결과치 개선 독려 필요

센터는 자체평가위원회에 취합된 의견을 참고하여 향후 사업계획 마련에 반영할 예정이다.



2023년 제1회 자체평가위원회(2023. 3. 15., 서울지방조달청 중회의실)



세미나



- 제1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

제1차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



주 제: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
일 시: 2023년 2월 15일(수) 14:00~16:30
발표자: 한국회계기준원 이용희 센터장, 센터 양은주 박사
장 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본관 8층 중회의실

글로벌 탄소중립을 위하여 각국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 소비지출에서 탄소발자국에 관한 정보의 필요성 또한 인식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비교가능한 공공부문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재무보고 기준 마련이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노력에 발맞추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는 2023년 제4회 KIPF 발생주의회계 국제심포지엄의 주제를 ‘공공부문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재무보고의 현황 및 쟁점’으로 정하고 관련 연구를 위한 전문가 세미나 시리즈 개최를 기획하고 있다.

첫 번째 세미나 시리즈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민간부문의 사례를 탐색하고자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센터의 이용희 센터장을 연사로 초청하여 강연을 진행하였다. 세미나는 센터 양은주 박사의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CFD) 개념 및 설립 배경’과 한국회계기준원 이용희 센터장의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S1, S2) 소개 및 관련 이슈’ 발표로 진행되었다.

1.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CFD)¹⁾ 개념 및 설립배경(양은주 박사)

가. 기후위기

기후변화는 직·간접적으로 금융안정성과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체계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기후변화 위험은 극단적인 기상현상과 기후의 점진적 변화를 의미하는 물리적 위험과 저탄소 경제 등의 정책, 기술 및 소비자 선호도 변화 등의 전환 위험으로 분리되며, 이는 실물경제 위축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악화를 유발하여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야기한다. 2020년 1월, 국제결제은행(BIS)은 보고서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금융위기를 의미하는 단어로 ‘그린스완(Green Swan)²⁾’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나.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CFD) 출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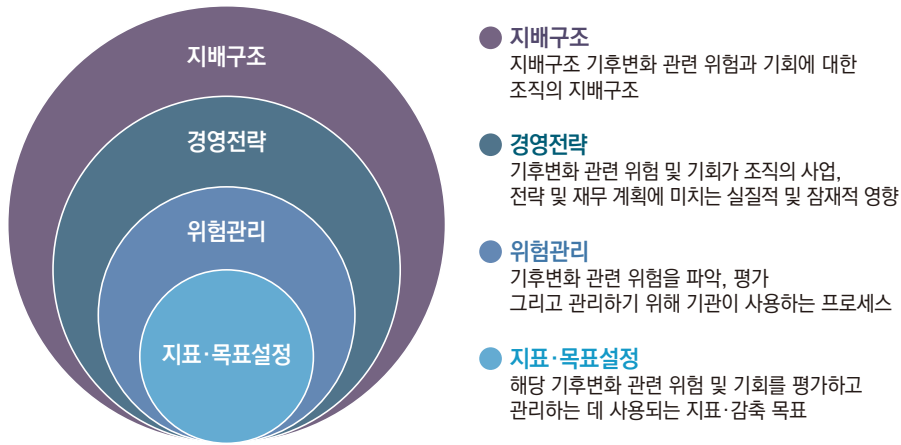
2015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금융부문의 기후변화 리스크 고려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고, 이를 계기로 같은 해 12월,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이하 ‘TCFD’)가 공식 출범하게 되었다. 2017년 6월, TCFD는 기후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최종 권고안을 공표하여 지배구조, 경영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 설정의 4개 핵심요소별 11개 항목의 공시 권고사항³⁾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의 재무정보이용자의 기후변화 위험과 기회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련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1)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TF(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

2) 그린스완이란 발생가능성이 낮아 예측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발생하면 큰 충격이 있는 금융위기를 뜻하는 블랙스완(Black Swan)에서 파생된 단어로, 예측은 어렵지만 발생가능성을 예견 가능하며, 발생하면 막대한 파급효과를 지님. BIS, The green swan, <https://www.bis.org/publ/othp31.htm>, 검색일자: 2023. 3. 20.

3)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6.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1/10/FINAL-2017-TCFD-Report.pdf>, 검색일자: 2023. 3. 20.

그림 1 4개 핵심요소



출처: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6., p. 14.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1/10/FINAL-2017-TCFD-Report.pdf>

표 1 세부 공시항목

4개 핵심요소	공시 권고사항(11개 항목)
지배구조	①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관련 사항 공시 ②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대처하는 경영진의 역할 공시
경영전략	①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조직이 직면하는 기후변화 관련 기회 및 위험요인 공시 ②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가 조직의 사업, 전략, 재무계획에 미치는 영향 공시 ③ 기후변화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조직 전략의 복원력 공시
위험관리	①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에 대한 조직의 인지 및 평가 관련 프로세스 공시 ②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에 대처하는 조직 차원의 프로세스 공시 ③ 기후변화 관련 위험요인의 인지, 평가 및 대응 프로세스가 조직 전체의 위험관리 프로세스에 통합되는지 설명
지표 및 목표 설정	① 조직 전략과 위험관리 프로세스 측면에서 기후변화 관련 기회·위험요인 평가 측정 지표 공시 ② 온실가스의 직접배출(Scope 1), 간접배출(Scope 2)과 그에 따른 위험을 공시,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기타간접배출(Scope 3)도 공시 ③ 기후변화 관련 위험 및 기회요인에 대응하는 조직차원의 목표와 성과 설명

출처: TCFD, Final Report: Recommendations of the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2017. 6., p. 14. <https://assets.bbhub.io/company/sites/60/2021/10/FINAL-2017-TCFD-Report.pdf>

추후 G7 등 주요 국가 및 기관에서 TCFD 권고사항을 지지하고 이행하였다. 2021년 7월 G7 재무장관 회의에서 TCFD 공시 의무화를 합의했고, 2022년 말에는 금융

및 비금융 부문 4천여 개 기관에서 TCFD 지지를 선언했으며, TCFD 보고서를 공식 요구하는 국가는 현재 9개국⁴⁾에서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1년 캐나다 밴쿠버시 결산서에는 TCFD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다⁵⁾.

TCFD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⁶⁾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차이점은 ISSB 공시기준은 TCFD 권고안에 기반하나,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이하 'SASB')⁷⁾ 기준을 수용하여 산업별 온실가스 관련 지표 공시를 요구한 데에 있다. 뒤이은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 발표에서 ISSB의 공시 초안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2.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소개 및 관련 이슈(이웅희 센터장)

가. 배경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COP21)을 기점으로 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기후 관련 규제가 제도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가운데 신규 규제 및 저탄소경제 등의 환경변화가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재무적 영향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기후변화 악화, 동아시아 인권문제 등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면서 기업의 ESG 정보 공개에 대한 글로벌 자본시장의 요구가 증대되었다.

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출범 및 공개 초안 발표

2021년 COP26에서 IFRS 재단은 자본시장 투자자들의 지속가능성 정보에 대한 고품질 글로벌 기준 요구에 대응하고자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이하 'ISSB') 설립

4) 스위스(2021년 7월), 영국, 일본(2022년 4월), 브라질(2022년 7월), 뉴질랜드(2023년), 싱가포르, 캐나다, 유럽연합(2024년), 홍콩(2025년)

5) CITY OF VANCOUVER, "Annual Financial Report 2021," <https://vancouver.ca/files/cov/2021-financial-statements.pdf>, 검색일자: 2023. 3. 20.

6)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 Board, ISSB)

7)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 SASB)

을 발표했다. 2022년 3월, ISSB는 국가별 요구사항들과 양립 가능한 기준을 제정하고자 기존 기준을 기반으로 두 가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 초안(S1, S2)을 마련하였다.

먼저 IFRS S1(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을 통해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선을 제시하였으며, IFRS S2(기후 관련 공시)를 통해 기업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해 투자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기업이 공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S1)

IFRS S1은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으로 목적, 적용범위, 4가지 핵심요소, 일반사항 및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일반 요구사항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가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기업에게 자원을 제공할지를 결정할 때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기업이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데 있다. 보고기업은 기업에 노출되는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이때 기업에 재무적 중요성 판단 부담이 존재한다.

두 번째로, 적용범위는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에 적용되며, 기업의 관련 재무제표가 IFRS 회계기준이 아닌 다른 국가별 GAAP에 따라 작성될 때에도 적용 가능하다. 단 기업 가치 평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는 포함되지 않는다.

세 번째로, 4가지 핵심요소는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며, 핵심요소별 설명과 공시항목은 아래의 표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각 핵심요소를 살펴보면, 먼저 지배구조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에 대한 정보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의사결정기구의 명칭 또는 개인 신원,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

임을 정책에 반영하는 방식, ③ 대응 전략을 감독하기 위한 기량 및 역량 확보 방법, ④ 의사결정기구 등이 관련 위험·기회를 통지받는 방법 및 빈도, ⑤ 위험 고려 방법, ⑥ 목표 설정 감독 방법 및 ⑦ 경영진의 역할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전략은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해당 위험·기회가 전략 계획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전략의 핵심인지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⁸⁾ 식별, ② 사업모형, 가치사슬, 전략 및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③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④ 위험에 대한 전략의 회복력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위험관리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어떻게 식별, 평가, 관리하는지와 이를 위험관리 과정에 통합하는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①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식별에 사용되는 과정, ② 위험·기회 식별 과정, ③ 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과정, ④ 이와 같은 과정이 전체 위험관리 과정 및 ⑤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에 통합되는 정도와 방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핵심요소의 마지막 항목인 지표 및 목표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① 다른 ISSB 기준이나 다른 원천 등으로부터 정의된 지표, ② 기업의 활동에 적용하는 활동 지표, ③ 지속가능성 위험·기회의 관리와 감독을 위한 지표 및 성과 측정 지표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네 번째로, 일반사항에는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의 식별과 공시, 중요성, 비교정보, 보고빈도, 정보의 위치,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 오류 및 준수 문구가 포함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보고기업) 일반목적재무제표의 보고기업과 동일
- (연계된 정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간의 연계성과 이러한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와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정보 간 연계 방식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공정한 표시) 기업에 노출되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공정하게 표시

8) 위험 및 기회는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및 현금흐름, 자금조달 접근성 및 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의미한다.

-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식별과 공시) 산업기반 SASB, CDSB⁹⁾, 다른 이니셔티브 등을 고려하여 모든 유의적인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중요한 정보 공시
- (중요성) 누락, 잘못 기재, 불분명할 시 투자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것이 예상되는 정보 공시
- (비교정보) 모든 지표에 대한 전기 비교정보를 공시하며, 서술형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공시에 대한 비교정보도 공시
- (보고빈도)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에 보고하고, 재무제표의 보고기간과 동일한 기간으로 함
- (정보의 위치)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일부로 공시하며, 상호참조도 허용
-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유의적인 추정 불확실성 지표 식별, 추정 불확실성의 원천과 성격, 불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공시
- (오류) 공시된 과거기간의 비교 값을 재작성함으로써 중요한 과거기간의 오류 수정
- (준수 문구)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관련 요구사항 준수 사실을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재

표 2 IFRS S1 일반 요구사항 구성

항목	주요 내용 및 공시항목	
목적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투자 의사결정에 유용한 유의적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유용한 정보 제공	
적용범위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따라 작성 및 공시하는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지배구조	기업이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	
핵심 요소	전략	단기, 중기, 장기에 걸쳐 기업의 사업모형과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다루는 접근법
	위험관리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지표 및 목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일반 사항	보고기업, 연계된 정보, 공정한 표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및 기회의 식별과 공시, 중요성, 비교정보, 보고빈도, 정보의 위치, 추정 및 결과 불확실성의 원천, 오류, 준수 문구	
부록	(A) 용어의 정의, (B) 시행일, (C) 유용한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질적 특성	

출처: IFRS 재단, ISSB,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초안]』, 2022. 3.

9) 기후공시기준위원회(Climate Disclosure Standards Board, CDSB)

표 3 4개 핵심요소별 공시항목

항목	공시항목
지배구조	① 의사결정기구(명칭, 개인 신임),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의 정책화, ③ 대응 전략 감독을 위한 기량 및 역량, ④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의 통지받는 방법·빈도 및 ⑤ 위험·기회 고려 방법, ⑥ 목표 감독 방법, ⑦ 경영진의 역할
전략	① 유의적인 위험·기회 식별, ② 사업모형·가치사슬 영향, ③ 전략·의사결정 영향, ④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예상 영향, ⑤ 전략의 회복력
위험관리	① 위험·기회 식별 과정, ② 위험관리 목적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식별 과정, ③ 기회 식별 과정, ④ 감독 및 관리 과정, ⑤ 전체 위험관리 과정 통합, ⑥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 통합
지표 및 목표	① 지표(다른 ISSB 기준에 정의된 지표, 다른 원천에서 식별된 지표, 기업 자체 개발 지표), ② 기업 활동에 적용하는 지표, ③ 목표(지속가능성 관련 위험·기회 관리 감독 지표 및 성과 측정 지표)

출처: IFRS 재단, ISSB,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 [초안]』, 2022. 3.

2) 기후 관련 공시(S2)

IFRS S2는 기후 관련 공시 요구사항으로 목적, 적용범위, 4가지 핵심요소 및 부록(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로, 기후 관련 공시의 목적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 기업은 기후 관련 공시를 작성하고 공시할 때 IFRS S1 지속가능성 관련 재무정보 공시를 위한 일반 요구사항에 따라 S2를 적용하고,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서 공통적인 항목의 정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 불필요한 중복을 피해야 한다.¹⁰⁾

두 번째로, 적용범위는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적용되며, 위험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위험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과 연관된 전환위험 등이 포함된다.

세 번째로, 4가지 핵심요소는 S1과 동일하게 지배구조, 전략, 위험관리, 지표 및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나 S2는 기후 관련 위험·기회에 중점을 두었다. 요소별 주요 내용과 공시항목은 아래의 표에서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S2의 주요 특징인 핵심요소의 전략과 지표 및 목표를 살펴보기로 한다.

10) IFRS S1 문단 78

먼저 전략은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 전략 정보를 의미하며, ① 물리적·전환 위험 등 위험 유형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기회의 식별, ② 기후 관련 위험·기회가 집중된 가치사슬 부분을 포함한 사업모형 및 가치사슬에 미치는 현재·예상 영향, ③ 기후 관련 위험·기회 대응 방법, 배출 목표량 및 탄소상쇄의 의도된 사용 등 기후 관련 목표를 포함한 전략·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 ④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기회의 현재 및 예상 재무적 영향, ⑤ 기후 관련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전략의 기후회복력¹¹⁾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표 및 목표는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이용자가 기업이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기회를 어떻게 측정하고, 감독, 관리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며, ①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3) 등 모든 기업이 공시해야 하는 7가지 지표 범주¹²⁾로 구성된 산업전반 지표, ② 11개 부문 68개 산업별 산업기반 지표(부록B¹³⁾), ③ 목표 달성 진척 측정을 위해 경영진이 사용하는 기타 지표 및 ④ 기업이 설정한 기후 관련 목표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표 4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구성

항목	주요 내용	
목적	일반목적재무보고의 주요 이용자에게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범위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위험과 기회(물리적·전환 위험 포함)	
핵심요소	지배구조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감독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배구조 과정, 통제 및 절차
	전략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다루기 위한 기업의 전략
	위험관리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식별, 평가 및 관리하는 과정
	지표 및 목표	유의적인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를 측정, 감독 및 관리하는 방법을 이해하고 기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
부록	(A) 용어의 정의, (B)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 (C) 시행일	

출처: IFRS 재단, ISSB, 『IFRS S2 기후 관련 공시 [초안]』, 2022. 3.

- 11) 기후변화와 관련된 불확실성에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역량을 의미하며, 전환 및 물리적 위험에 대응하고 적응하는 능력을 포함한 기후 관련 위험을 관리하는 능력과 기회에 효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 12) 온실가스 배출량, 전환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배치, 내부 탄소 가격, 보상
- 13)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산업 설명, 공시주제, 지표, 세부 프로토콜, 활동지표)

표 5 4개 핵심요소별 공시항목

항목	공시항목
지배구조	① 의사결정기구(명칭, 개인 신원), ② 의사결정기구의 책임의 정책화, ③ 대응 전략 감독을 위한 기량 및 역량, ④ 의사결정기구와 위원회의 통지받는 방법·빈도 및 ⑤ 위험·기회 고려 방법, ⑥ 목표 감독 방법, ⑦ 경영진의 역할
전략	① 유의적인 위험(물리적·전환 위험) 및 기회 식별, ② 사업모형·가치사슬 영향, ③ 전략·의사결정 영향(대응방법, 기후 관련 목표, 계획의 진척 정보), ④ 재무상태, 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과 단기, 중기, 장기에 걸친 예상 영향, ⑤ 기후회복력(시나리오 분석)
위험관리	① 위험·기회 식별 과정, ② 위험관리 목적을 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위험 식별 과정, ③ 기회 식별 과정, ④ 감독 및 관리 과정, ⑤ 전체 위험관리 과정 통합, ⑥ 기업의 전체 관리 과정 통합
지표 및 목표	① 산업전반 지표 범주 관련 정보 ¹⁴⁾ (온실가스 배출량 ¹⁵⁾ 등), ② 산업기반 지표(부록B), ③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사용하는 그 밖의 지표, ④ 기업 자체 설정 목표

출처: IFRS 재단, ISSB, 『IFRS S2 기후 관련 공시[초안]』, 2022. 3.

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논의 및 향후 계획

ISSB는 2022년 3월 공개초안 발표 이후, 같은 해 7월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심의 안건을 선정하여 논의를 진행 중이다. 주요 논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보고시기 관련 재무제표와 동시보고 규정을 완화하여 동시보고는 수행하되, 재무제표 발행 이후 짧은 기간(반기) 한도로 지속가능성 재무공시를 수행하는 경과 규정을 도입하였으며, S2의 지표 및 목표의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관련, 모든 기업에 대해 Scope 3 배출량 공시 시행일을 1년 연기하였다. 또한 S2의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부록B)을 비강제적 지침으로 변경하였으나, 추후 연구를 거쳐 의무지침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14) 온실가스 배출량(Scope 1~3), 전환 위험, 물리적 위험, 기후 관련 기회, 자본배치, 내부 탄소 가격, 보상 등 7가지 지표 범주

15) 온실가스 프로토콜 기업기준에 따라 측정된 보고기간에 발생한 온실가스 절대 총배출량, 온실가스 배출은 배출원의 구분에 따라 △Scope 1(직접배출), △Scope 2(간접배출), △Scope 3(기타 간접배출)로 분류됨

또한 공개초안에서는 기후회복력 평가를 위해 시나리오 분석이 불가능할 경우 대체적 방법을 사용할 것을 제정하였으나, 이를 삭제하여 기업 상황에 상응하는 시나리오 분석을 사용할 것을 규정하였다. 그리고 산업기반 공시 요구사항(부록B)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지표인 금융 및 촉진배출량 공시 요구에서 인수기업의 배출량을 의미하는 촉진배출량은 공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ISSB는 심의 안건 논의를 완료하여, 올해 6월 말에 최종 기준을 발표하고 내년 초에 국별 감독기구에 권고 사항을 제기할 예정이다.



2023년 제1차 전문가 세미나(2023. 2. 15., 본원 8층 중회의실)



오피니언



-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유승원 교수(고려대학교, 한국회계학회 회장)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에 대한 기대와 바람

유승원 교수(고려대학교, 한국회계학회 회장)



국가회계는 국가의 재정상황을 파악하고 예산의 재원 및 지출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그 적정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국가회계는 재정의 운영 주체인 국가와 재정운영의 이해관계자인 국민 사이 국가운영에 대한 정보불균형을 해소하여 국민이 국가운영에 대해 공정한 평가가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예산 수입과 지출의 파악에 필요한 재정 전반의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평가해야 하며, 전문인력과 예산의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회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2년 5월 발생주의에 따라 작성된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에 제출되며 본격적인 발생주의회계를 도입하였다. 그럼 이러한 발생주의회계로의 전환 이후 바뀐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 아마 많은 주목을 받은 내용은 연금충당부채일 것이다. 연금충당부채는 발생주의회계가 도입된 이후 매년 부채로 재무제표에 공시되고 있고, 공무원과 국민 모두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연금충당부채의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적인

주목은 많이 받고 있지만, 현실은 연금충당부채의 산정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해관계자 간 관점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¹⁾

또한 국가회계제도 변화에 따라 정보이용자인 국민의 이해도가 높아지지도 않은 듯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회계 전문가로 불리는 회계연구자의 국가회계 관련 연구 논문이 지난 3년간 회계학 분야 등재지 수록 논문의 약 4%밖에 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가 14명에 불과하다는 분석을 통해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부족한 상황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²⁾

물론 지난 10년 동안 발생주의 국가회계에 대한 평가와 함께 국가회계 전반에 걸친 다양한 개선 논의가 개진된 것도 사실이다. 예를 들어, 2022년 3월 본인이 회장으로 있는 한국회계학회는 ‘공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 개혁 제언’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제언서를 발간하였다. 이 심포지엄과 제언서는 우리나라의 시대적 요구인 공정과 사회적 신뢰 회복의 근간이 되는 회계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가 재정 책임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가 겪는 많은 변화와 관련된 회계 발전 및 개혁을 위한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재정 회계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가회계 개혁’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회계 개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특히 이 제언서는 연금충당부채 등의 미래 재정부담요인을 파악하는 발생주의 회계의 성과를 평가하고 있으면서도, 방대한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는데 비해 전반적인 복잡성 및 이해가능성의 측면에서 일선 공무원이나 국민에게 국가회계 자료가 외면 받고 있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³⁾ 그리고 재정보고서의 작성 책임 강화 및 이해가능성의 제고를 중요한 정책적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즉, 국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관련된 국가회계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모든 국민에게 중요한 문제이므로 국가회계정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1) 한소영 외, 『OECD국가별 연금충당부채 해외사례 조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2020. 12.

2) 한종수, 「회계 전문가의 관심을 받지 못 하는 국가회계」, 『국가회계재정통계』, 2022년 가을호, pp. 62~66.

3) 한국회계학회, 『공정과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 개혁 제언서』, 2022. 3.

최근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이하 ‘개편방안’)을 심의 의결하였다.⁴⁾ 의결된 주요한 변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주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

개편 항목	주요 내용
재정상태표	- 계정과목 간소화 - 장단기 구분이 아닌 항목별 계정통합정보
재정운영표	- 예산 15대 분야별 사업순원가 산출 - 분류의 간소화 및 수익·비용 측면에서 세부 항목을 보여 줄 수 있도록 성질별 정보도 주 재무제표로 작성
현금흐름표	- 현금흐름표의 신규 도입
주석	-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석으로 통합·단일화
결산개요	- 부총리 메시지 및 결산 검사 결과 추가 - 재무결산 분석 및 국민 관심도가 높은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설명 확대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국가회계팀 발표자료, 「국가결산체계 개편방안」 참조

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몇 가지 중요한 개선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재무제표의 이용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의 복잡한 보고항목과 체계를 간소화하려는 노력이 보인다. 재정상태표의 경우 102개의 계정과목을 금융자산과 유무형자산, 기타 자산, 차입부채, 총당부채, 기타부채 등 6개 중간분류, 34개 계정과목으로 간소화하여 공시내용을 이해관계자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재정운영표의 경우에도 사업수행과 직접 관련된 15대 국가 사업분야별 사업원가를 집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성질별 재정운영표를 수익·비용으로 분류하는 등 계정과목 간소화 방향으로 재정운영표 이해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간소화된 재무제표를 공시하는 민간 기업 공시에 상대적으로 익숙한 국민에게 국가회계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의 활용도를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획재정부,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국가결산보고서」 개편 방안 마련」, 보도자료, 2022. 12. 16.,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2257&menuNo=4010100

다음으로 기존에 공시하지 않던 현금흐름표를 신규로 공시하기로 한 점도 국가회계 정보의 이해 및 활용을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금주의로 작성되는 세입·세출결산 자료는 그 내용이 방대하여 전반적인 현금흐름을 파악하는 데 많은 노력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므로 직접법으로 작성되고 운영·투자·재무 활동별로 현금의 유입과 지출 결과를 공시한다는 점에서 현금흐름표의 신규 작성 및 공시는 국가의 재정활동별 정보를 제공하는 긍정적 개선이라 생각된다.

물론 개편방안이 추구하는 재무제표의 간소화는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국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위험도 있다. 그러나 개편방안은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해 주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를 주식으로 통합하고 모든 계정과목의 주석을 공시하게 하는 등 재무제표 정보의 이해에 필요한 추가 정보가 충분히 국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국가재무제표에 반영된 숫자 정보에 대한 설명을 체계적으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공시범위가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 즉, 국가재정에 관심 있는 국민이 국가재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재정상태표와 재정운영표를 통해 파악하고, 관심 있는 세부 항목의 내용은 민간 기업 수준의 주석 공시로 확인하게 한다는 점에서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국가재무제표 개편방안은 결산의 책임성과 신뢰성의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국가 재정운영의 주요 사항 및 평가에 대한 부총리의 메시지를 결산개요에 포함하고,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의 회계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는 방향이 추가되어 있다. 결산회계는 민간이나 국가 모두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감사는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전제되어야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부총리의 메시지를 통해 재정보고서의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긍정적인 개선으로 판단된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란이 발생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가재정 정보의 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개편방안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추가적인 고려사항을 제안해 본다. 첫째, 기존에 진행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의 개편방안에 대한 시범 작성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회계학회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교류를 통해 국가회계 개편 내용을 홍보하고 국가회계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야 할 것이다. 개편방안의 중요한 목적이 정보이용자인 국민의 국가회계 이해를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인 만큼 국가 재정 활동에 대한 정보공시가 간소화되고 이해가능성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개편된 국가회계정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지속적인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환경 변화에 뒤처지지 않는 국가회계 원칙을 준비하기를 기대해 본다. 둘째, 개편방안을 시스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디브레인의 개선뿐 아니라 정보의 디지털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국가회계정보를 투명하고 적시성 있게 공시하는 노력을 기대해 본다. 특히, 이번 국가회계 개편이 정보활용 측면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에서 국가 재무제표, 결산서 등의 내용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회계정보가 적시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될 때, 일반 국민과 회계 및 정책 전문가에 의한 정보의 분석 및 활용이 용이해지고 국가운영자와 국민 간의 정보불균형 문제가 줄어들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가회계 개편과 관련하여 회계 역량 및 인력의 강화가 필요하다. 국가회계는 그 작성뿐 아니라 감사하는 인력의 역량에 의해 유용성이 결정되게 된다. 따라서 국가회계에 대한 작성 및 감사 역량을 증대하고 충분한 인력을 양성, 확보하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국가결산보고서는 단순히 국가재정 정보의 수집과 공시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미래 국가정책 수립 및 국가적 통합에 도움이 되어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의사결정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 개편방안이 국가회계정보의 활용성을 높여 그 목적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본 칼럼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의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공지사항



구독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는 회계전문연구기관인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발간하는 분기 발간물로서, 주요 내용으로 국가회계, 국가결산, 국가회계교육, 재정통계, 공기업·준정부기관, 공익법인회계기준 등에 대한 동향 및 분석 자료를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을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 보실 수 있으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 방법

- 홈페이지 신청 <http://gafsc.kipf.re.kr>
- 이메일 신청 gafsc@kipf.re.kr



홈페이지 이용 안내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홈페이지(<http://gafsc.kipf.re.kr>)는 국가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및 센터가 수행하는 정책연구 관련 정보를 제시하며, 국가회계기준에 대한 단순질의에서 문서질의까지 질의회신을 통해 신속하게 답변하고 있으니 평소 궁금했던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신 발간자료와 주요 발간자료 메뉴를 통해 연구보고서, 기타보고서, 브리프, 세미나자료 등 국가회계 및 재정통계 발간물 등을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배치하여,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과 투명한 회계를 위한 노력!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가 앞장섭니다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별관 4층
Tel 044.414.2265 Fax 044.414.2570

